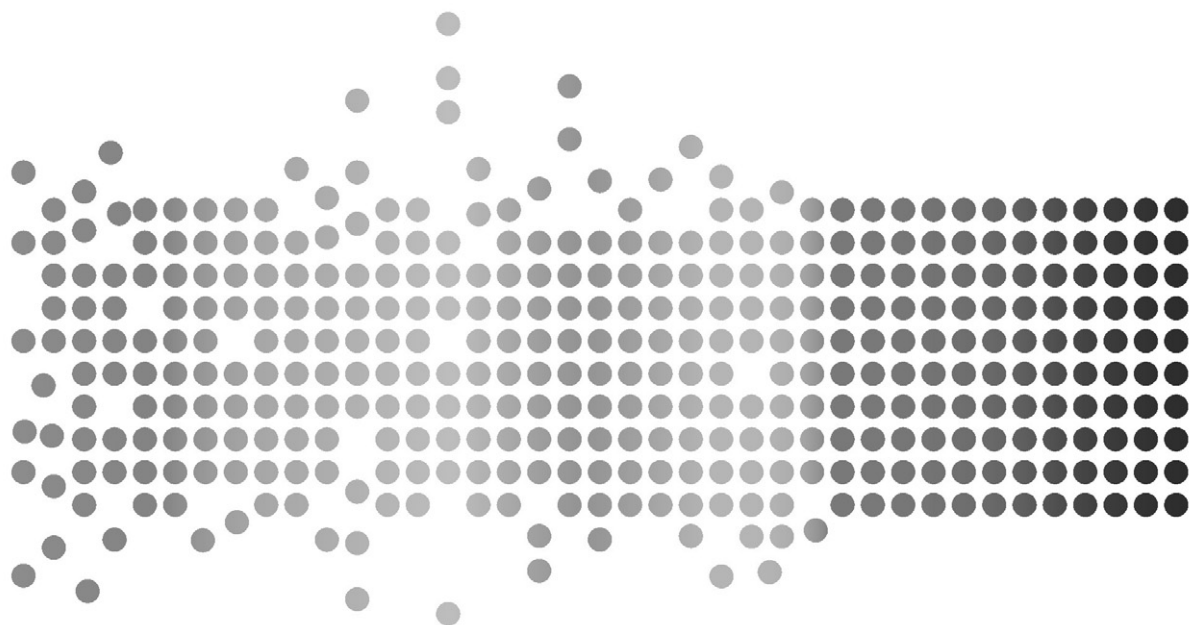




주민등록전산망에 의한 인구관리방안

Management of Population by Residential Registration System

이삼식 · 김은정 · 배다영 · 김형석 · 변미리



연구보고서 2011-51

주민등록 전산망에 의한 인구관리 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저자	이삼식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ISBN 978-89-8187-768-2 93330



머리말

현재 한국사회는 저출산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장래의 인구변동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주체들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구는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동하며, 이들 요소들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변화한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측정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국가의 인구를 제대로 그것도 시의성 있게 파악하는 일은 그 자체로 그리고 향후 인구변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토대로 추정 혹은 추계하는 인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성이 노정되고 있다. 우선 5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추계 이후 인구변동요소(출생, 사망, 국제이동)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게다가 인구 추계 시 이전의 5년 간 우리나라 인구를 확정하고 있어, 매년 공식인구는 최대 5년이 지나서야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년 우리나라 공식인구를 작성 및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선진국에서와 같이 상시적으로 공식인구를 작성하여 인구전략 등 정책은 물론 다양한 행정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인구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통계의 작성체계 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민등록전산망 체계를 분석하며, 주민등록인구의 변동요소별로 보정방법을 개발하였다. 이와 같은 상주개념의 보정인구를 공식인구로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안들은 정책적 및 학술적으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본 연구진은 관련 정부관계자와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장영식 선임연구위원과 박종서 부연구위원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11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요 약	1
제1장 서론	9
1. 연구배경 및 목적	9
2. 연구내용	11
3. 연구방법	12
제2장 외국의 등록인구	17
1. 캐나다 등록인구	17
2. 스웨덴 등록인구	19
3. 프랑스 등록인구	23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생산체계	29
1. 인구통계 개념 및 범주	29
2. 센서스인구 생산체계	30
3. 추계인구 생산체계	32
4. 주민등록인구 생산체계	36
제4장 주민등록전산망 체계 및 활용	41
1.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연혁	41
2. 주민등록전산망 체계	44
3. 주민등록전산망의 자료 형성 및 활용	47

제5장 주민등록인구 변동 요소	57
1. 주민등록 변동요소	57
2. 외국인등록 변동요소	67
3. 등록인구 변동요소 관리의 시사점	73
제6장 주민등록 활용 인구관리 방안	79
1. 분석방법	79
2. 주민등록인구 평가 및 보정방법	81
3. 주민등록인구의 보정 사례	90
4. 주민등록을 활용한 인구관리 방안	104
제7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3
부 록	117

표 목차

〈표 2- 1〉 스웨덴의 등록인구 정보	20
〈표 2- 2〉 스웨덴 등록인구 정보의 사용기관	22
〈표 2- 3〉 스웨덴 등록인구 정보 정확성 확인 방법	23
〈표 2- 4〉 프랑스 등록인구 시스템의 활용 목적	24
〈표 3- 1〉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32
〈표 4- 1〉 주민등록 전산화 연혁	42
〈표 4- 2〉 주민등록전산망 상 주요자료(내용)	46
〈표 4- 3〉 232개 시군구청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별 세부현황	49
〈표 5- 1〉 주민등록인구 변동요인	58
〈표 5- 2〉 주민등록 말소조치 현황, 2001~2006	66
〈표 5- 3〉 장·단기 및 합법 여부에 따른 체류외국인 현황, 2006~2010	70
〈표 5- 4〉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2006~2010	71
〈표 6- 1〉 주민등록인구의 생존비(0-7세, 2000~2009)	83
〈표 6- 2〉 출생 지연신고 추정(t년 말 현재)	84
〈표 6- 3〉 사망 지연신고 추정(2005년 말 현재)	85
〈표 6- 4〉 출생연도별 실제연령과 주민등록연령 간 일치율 (1996~2005년생)	87
〈표 6- 5〉 출생연도별 실제연령과 주민등록연령 간 일치율 (전체 출생연도)	88
〈표 6- 6〉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의 차이 분포(전체 출생연도) ..	88
〈표 6- 7〉 실제 연령별 주민등록연령 분포	89
〈표 6- 8〉 주민등록 중 해외 장기 거주자의 규모(2005년 말 현재) ..	90

〈표 6-9〉 주민등록 중 해외 장기 거주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말 현재)	91
〈표 6-10〉 7세 이하 주민인구의 출생 지연신고 추정(2005년 말 현재)	92
〈표 6-11〉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된 사망 미신고분	93
〈표 6-12〉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 적용결과	96
〈표 6-13〉 주민등록 지역보정계수 적용결과	98
〈표 6-14〉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 보정인구간 차이(연말기준)	99
〈표 6-15〉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전체)	101
〈표 6-16〉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남성)	102
〈표 6-17〉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여성)	103
〈부표 1〉 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남자)	117
〈부표 2〉 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여자)	119
〈부표 3〉 시도별 주민등록지 및 상주지 분포	121

그림 목차

[그림 4- 1]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성도	45
[그림 4- 2]	시군구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네트워크 현황 ...	47
[그림 4- 3]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업무 구성	48
[그림 4- 4]	시군구 주민요약 DB 이용현황	50
[그림 4- 5]	시군구 주민요약 DB 이요현황 예시: 재세정 과세자료조회 업무	51
[그림 5- 1]	외국인 등록절차	68
[그림 6- 1]	주민등록인구의 생존비(0-7세, 2000~2009)	83
[그림 6- 2]	주민등록 중 해외장기거주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 (2005년 말)	90
[그림 6- 3]	주민인구의 출생 및 사망누락 추정(2005년 말 현재) 94	
[그림 6- 4]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 ..	95
[그림 6- 5]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 일치율(남성, 1993, 2008)	97
[그림 6- 6]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 일치율(여성, 1993, 2008)	97
[그림 6- 7]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 보정인구 간의 차이(2005년 사례)	100

요약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압축되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변동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인구 변화의 원인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하고 시의성(timeliness) 있는 인구 자료의 확보이다.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모든 행정 및 법적 처리(취학, 병역, 신원확인, 출입국 관리, 사회보장 수급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매년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나 인구추계와 달리 상시적으로 인구를 작성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인구를 다루고 있는 주민등록인구의 체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상시적인 공식 인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된 내용으로는 선진국 사례 분석, 우리나라 인구통계 생산체계 분석,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체계 분석, 주민등록인구 변동요소 진단, 주민등록인구를 보정하여 상주개념의 인구를 작성하는 방법 개발,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인구관리 방안 제시 등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고찰, 현지방문 사례면접조사, 인구분석, 전문가회의 개최 등을 적용한다.

우선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스웨덴은 개인의 성별 및 생

년월일별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 Identity Numbers)를 부여하는 등록인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식별번호 정보는 등록인구 식별 목적 이외에도 총선거 실시, 인구통계 작성, 세금 관리, 연금 및 각종 수당 지급, 학교 및 병원 설립 등 공공영역과 보험 및 은행 상품 가입, 회사 회계업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인구 파악을 목적으로 모두 등록인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개인식별번호를 가지고 있고 스웨덴에서 출생한 경우, 스웨덴으로 이주한 사람 중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두 거주지역의 세무서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인구시스템에서 정보가 삭제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통계로서 센서스인구, 추계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각각의 작성체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인구센서스(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인가와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25년 이래 2010년까지 거의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단, 1944년 및 1966년 센서스는 예외).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누락 및 중복을 보정하여 당년도 인가로 확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직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의 인구를 추정(estimation)하여 확정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연도와 과거연도의 인구는 우리나라 확정인구로 간주할 수 있으나, 장래인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인구변동요소(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의 변화를 가정하여 추계한 전망치일 뿐이다. 또 다른 제약점으로는 추계인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서 인구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인구특성이 강하며, 법적 및 행정적 인구와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 행정부처에서는 정책지표를 산정하거나 정책수요를

추정하는 경우 추계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향이 존재한다. 추계인구는 광역자치단체로 작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소지역의 인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지역 이외에 인구의 기본특성별로 인구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주민정보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이동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한 제도이다.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매년 연말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을 집계한 인구이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작성체계로는 읍·면·동 행정기관별로 주민등록표 상 내국인을 전산 집계한다. 구·시·군에서는 읍·면·동별 내국인을 취합하고, 외국인등록표에서 외국인을 집계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 및 읍면동별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기관별로 주민등록인구통계를 최종확정하고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를 통계청에서 취합하여 전국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거한 주민등록인구는 센서스인구와 마찬가지로 소지역별로 작성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센서스인구에서와 달리 조사나 자료처리과정에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은데다가 매년(매월) 작성할 수 있어 시의성 수준이 매우 높다. 주민등록인구는 다목적의 성격을 가진 행정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특히 다른 행정목적의 편익을 감안하면 통계작성에 드는 순비용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민 등록을 변경시키는 요소로는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록신고, 주민등록 말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특정지역 주민등록인구로의

등록과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인구로부터 말소(제외)로 구별해볼 수 있다. 전자의 등록은 거주지 변동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전입신고, 사건 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출생신고, 그리고 말소 후 재등록을 포함한다. 후자의 말소는 신고말소(무단전출에 대한 주민신고, 사망신고), 직권말소(허위신고, 무단전출, 사망, 이중등록, 국외이주, 현지이주, 국적이탈), 기타말소(이의신청 말소, 기타말소) 등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제한점들로는 주민등록인구 일부는 실제 거주지 혹은 상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역별 인구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학업(유학),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 혹은 국가로 이동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때문이다. 게다가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 허위신고, 주민등록 말소, 출생과 사망의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 거주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주민등록인구가 공식인구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향후 주민등록인구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평가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출생 및 사망의 지연신고를 감안할 때,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해 목표연도(예를 들어, 2010년 인구)의 인구를 바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해 과거 특정시점의 상주인구를 소급 추정한 후 여기에 그 시점 이후의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가감하여 추정인구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주민등록인구의 평가와 보정은 커버리지(coverage)와 내용(content)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우선 커버리지(coverage)에 대해 보정한다. 특정년도의 주민등록인구는 인구동태신고시스템과 인구동태집계방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과 사망은 발

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에 출생과 사망은 신고시점에서 반영된다. 따라서 발생시점 기준의 상주인구 개념에서 작성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2월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이 해를 넘겨 익년 1월에 신고하면 정상 신고지만 연말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주인구의 관점에서는 12월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은 다른 해에 신고 되더라도 12월 인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도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작성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도 있다. 현재 특정년도의 출생과 사망은 익년 4월까지 신고된 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만약 주민등록인구를 연말기준으로 작성한다면 i) 전년도 12월 이전 출생과 사망 중 지연신고와 전년도 12월 출생과 사망 중 1월에 신고된 법정기한 내 신고가 함께 있는 1월 중 신고된 출생과 사망, ii) 지연 신고 되었으나 공식통계에는 포함되는 2~4월에 신고된 전년도 출생 및 사망, iii) 5월 이후에 신고 되어 공식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전년도 출생과 사망 모두 제외된다. 여기에서는 법정기한 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도를 달리해 신고 되는 모든 출생 및 사망 모두 지연신고로 간주하여 추정한다.

다음으로 내용(content)에 대한 평가와 보정은 주민등록인구의 연령과 거주지에 초점을 둔다. 1993년과 2008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들을 이용하여 연령 및 지역 보정계수를 추정·적용한다.

이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인구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현행 주민등록인구는 법적 기한 외에 지연 신고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비록 일부 인구가 특정 시점(연말) 기준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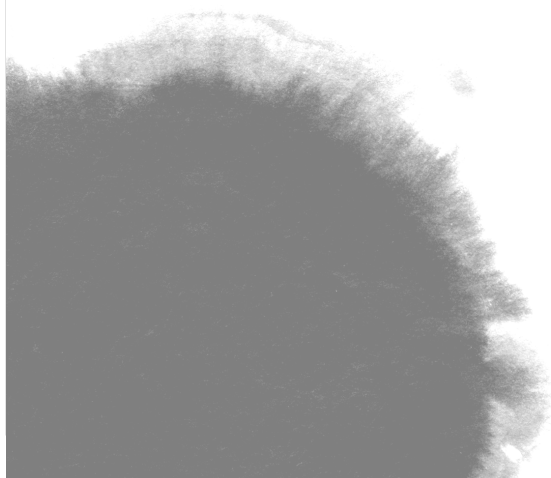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으로 인정되는 공식인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민등록인구는 현행대로 공표하여 활용토록하며, 추후 일정기간을 거쳐 보정된 상주개념의 인구를 우리나라 공식인구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인구센서스는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인구를 보정한 상주개념의 인구를 우리나라 공식인구로 확정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등록인구는 잠정치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추후 이를 보정한 상주개념의 인구는 확정치의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등록인구와 보정인구간의 차이를 줄이고, 또한 보정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출생과 사망은 법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기간은 인터넷 등이 발달되기 이전 모든 것을 종이 등에 의거하여 신고할 시기에 규정된 것이다. 최근 통신의 발달 등을 감안하며 주민등록인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신고제도의 신고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를 상주개념의 인구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령에 관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민등록인구를 상주 개념의 인구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등록인구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계청 등이 공동으로 협의 및 심의를 위한 기구(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식인구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공식인구를 작성 및 확정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 및 고령화로 압축되는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변동에 대응하여 저출산고령 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인구 변화의 원인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정확하고 시의성(timeliness) 있는 인구 자료의 확보이다.

우리나라에서 이용하고 있는 인구의 자료원은 대표적으로 인구주택총조사(이하에서 ‘인구센서스’로 병기하여 사용하도록 한다),¹⁾ 주민등록시스템 및 인구추계를 들 수 있다. 인구센서스는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모든 인구와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관할 주소지의 인구를 등록하는 시스템이다. 인구추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기준인구(base population)로 설정하고 인구동태율(출산율, 사망률, 국제인구이동)의 변화를 가정하여 장래 인구를 전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인구 자료원 각각은 정확도, 시의성, 구체성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구센서스는 모든 인구와 가구

1)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와 주택을 함께 조사하는 이른바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자료원별 한계점들로 인하여 매년 우리나라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통계청에서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소급추계(backward estimation)를 실시하여 이전 5년간의 매년 인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우리나라의 정확한 인구를 파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 변동에 대해 전사회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확한 인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은 미래 인구 변동에 대한 전망치가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구 자료를 토대로 한 정책들도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인구 자료를 상시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주민등록인구는 모든 행정 및 법적 처리(취학, 병역, 신원확인, 출입국 관리, 사회보장 수급 등)에 있어서 기준이 되고 매년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센서스나 인구추계와 달리 상시적으

로 인구를 작성하고 있으면서 실제적인 인구를 다루고 있는 주민등록인구의 체계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의 상시적인 공식 인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시의성 있고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제2절 연구내용

본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일찍부터 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매년 인구를 생산하고, 이를 다양한 행정 및 정책의 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도록 한다. 본 사례 분석을 위하여 서유럽의 프랑스, 북유럽의 스웨덴 및 미주의 캐나다를 대상으로 설정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 통계의 유형과 생산체계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추계로 설정한다. 각 인구통계 자료원별로 작성되고 있는 인구의 개념과 범주, 생산과정, 생산방법(주기, 발표 등), 활용 등을 살펴본다. 특히 자료원별로 인구통계 생산체계 상 오류의 유형과 그 원인을 진단한다.

제4장에서는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의 체계와 활용을 살펴본다. 주민등록전산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 시스템별로 체계와 내포자료의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한다. 주민등록전산망 관련 제도의 변화와 그러한 변화로 인한 주민등록인구 자료의 부정확성 유인 효과 등을 진단한다.

제5장에서는 행정 목적의 등록제도를 통해 작성되는 등록인구의 변동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한다. 여기에서 등록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포함한다. 주민등록인구를 변동시키는 요소들

로 출생신고, 사망신고, 국내·외 이주신고, 주민등록 말소, 외국인 등록 등이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등록 상태를 변동시키는 요소도 진단한다. 각 요소별로 등록과정(신고체계 등)과 오류 발생의 원인을 분석한다.

제6장에서는 주민등록인구를 보정하여 상주개념의 인구를 도출 및 확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앞의 장에서 제시한 주민등록인구의 변동 요소별로 오류 정도를 측정 및 보완하는 방법들을 고안한다. 이를 위하여 실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즉, 각 요소별로 인구 규모와 구성(거주지, 성, 연령)을 보정하고, 이를 총합하여 연도별로 정확한 인구를 산정한다. 특정 시점(연말 또는 연앙 기준)에서 실제 한국(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상주개념의 인구를 확정 및 공식인구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및 조직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한다. 제7장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다.

제3절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고찰, 현지방문 사례면접조사, 인구분석, 전문가 회의 개최 등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적용한다.

문헌 고찰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의 작성체계와 오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다. 인터넷을 통해 선진국의 사례들을 검색하여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구 작성 및 활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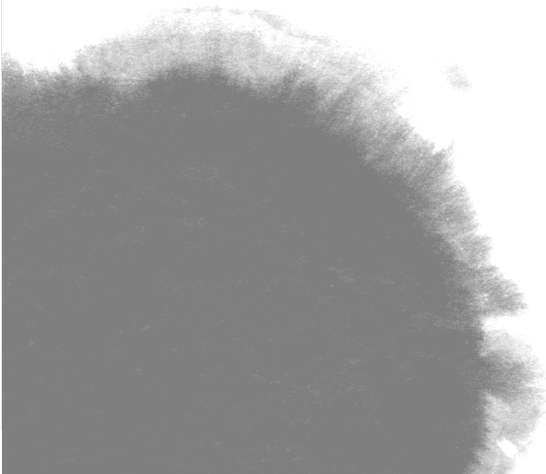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주민등록전산망의 체계와 오류(문제점)의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망 담당자, 기초자치단체와 동자치센터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례면접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사례면접은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들이 동일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접근성이 높은 각급 행정기관 1개씩만을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인구분석방법의 적용이다. 주민등록인구를 상주개념의 인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인구 변동요소별로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의 인구 간 차이를 각종 시스템에서 제공된 자료를 이용하여 보정한다. 기존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인구의 특성(거주지, 성, 연령)별 보정계수를 산정하고 실제 자료에 적용한다. 인구변동요소별로 보정된 인구를 기초적인 인구방정식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총인구를 산정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 단계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한다. 전문가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도로 연구에 반영한다.

02

외국의 등록인구



제2장 외국의 등록인구

제1절 캐나다 등록인구

캐나다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신분증명 제도는 없으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와 같은 사회보험번호(SIN, Social Insurance Number)를 제한된 용도에서 사용하고 있다. 사회보험번호는 실업보험(UI, Unemployment Insurance), 캐나다 연금계획(CPP, Canada Pension Plan), 퀘벡 연금 계획(QPP, Quebec Pension Plan)의 자료를 식별하고, 납세자, 연금 및 수당 수급자에 대한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196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사회보험번호는 총 9개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및 유효한 노동허가를 가진 임시거주자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번호는 캐나다 인적자원사회개발부(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발급·관리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사회보험등록(SIR, Social Insurance Register) 시스템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사회보험번호 카드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개인 정보는 모두 사회보험등록시스템에 포함되게 된다. 여기에 등록되는 개인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등록 개인 부모의 이름, 사망일 등이다. 사회보험번호와 관련된 정책 및 규정은 국가재정위원회에서 맡고 있으며, 사회보험번호는 캐나다의 복지서비스, 소득세 납부관리를 위

한 개인 식별 방법으로만 사용된다(Service Canada, 2011). 사회보험 번호 수집 등의 행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초과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다고 규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회보험번호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에게 제시요구 목적과 강제성 여부, 제시 거부 시 결과에 대해 미리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특성 때문에 사회보험번호는 각종 통계 데이터 매칭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실행 시 사회보험번호가 사용되고 있으며, 소득과 관련된 모든 국가 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가의 공식적인 식별 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20개 이상의 연방정부 법령 및 규정들은 사회보험번호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는 개인정보 노출 및 등록된 개인정보 부정확성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회프로그램의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보험번호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에서 사회보험번호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에 관한 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사회보험번호 정보의 적합한 사용에 대하여 대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Committee Report, 2003).

정보의 정확성과 관련하여 사회보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의 신뢰성과 완전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캐나다 통계청에서 추정한 20세 이상 인구에 비해 사회보험등록시스템에 등록된 20세 이상 인구가 500만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설명이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2002년부터 인적자원사회개발부는 사회보험번호 정보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잘

못된 정보의 활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320만 명의 휴면 사회보험번호 정보를 비활성화 시켰다. 만약 해당 사회보험번호 정보가 고용보험 적용이나 소득세 신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이 바로 진행된다. 또한 캐나다 시민권이 없거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9’로 시작되는 사회보험번호를 부여하고, 이들의 노동 허가 기간과 일치하는 만료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만료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해당 사회보험번호 정보를 비활성화 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방 데이터베이스(CPP 및 Old Age Security) 및 각 지방 주요 통계자료와의 비교를 통한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제2절 스웨덴 등록인구

스웨덴은 개인의 성별 및 생년월일별 개인식별번호(PIN, Personal Identity Numbers)를 부여하는 등록인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와 상당히 유사하다(행정자치부, 2007). 개인 식별번호 정보는 등록인구 식별 목적 이외에도 총선거 실시, 인구통계 작성, 세금 관리, 연금 및 각종 수당 수급, 학교 및 병원 설립 등 공공 영역과 보험 및 은행 상품 가입, 회사 회계업무 처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스웨덴의 등록인구시스템은 1500년대 교회등록에서 비롯된 매우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1947년 개인의 출생일과 성별 정보를 포함한 10자리 숫자로 구성된 개인식별번호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개인식별번호는 6자리의 생년월일, 3자리의 출생번호, 1자리의 확인번호로 구성된다. 생년월일은 개인의 출생연도·월·일의 순서로

부여되고, 출생번호는 같은 날 태어난 사람들 간의 출생 순서에 따라 남성은 홀수, 여성은 짝수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확인번호는 1967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생년월일과 출생번호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1991년 등록인구에 대한 책임은 스웨덴 교회에서 세금관리 당국으로 이관되었다. 국세청(National Tax Board) 산하 10개의 지방국세청(Regional Tax Authorities)에 소속된 116개 세무서(Tax Offices)에서 각 해당 지역 등록인구를 전담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 가족관계, 거주지 정보를 관리한다. 보다 구체적인 등록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정보에 변화가 있을 시에도 이를 기록으로 남긴다.

〈표 2-1〉 스웨덴의 등록인구 정보

유형	내용
개인 정보	이름, PIN, 국적, 출생지, 해외로부터의 이주 여부, 등록인구 시스템에서의 말소 이유(사망, 이민, 기타 등), 사망 및 묘지 정보
가족관계	혼인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18세 이하 자녀의 보호자, 입양
거주지 정보	거주 지역, 교구, 건물, 주소

자료: Skatteverket(2000), Population Registration in Sweden.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은 인구 파악을 목적으로 모두 등록인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개인식별번호를 가지고 있고 스웨덴에서 출생한 경우, 스웨덴으로 이주한 사람 중 적어도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모두 거주지역의 세무서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등록인구시스템에서 정보가 삭제된다(Skatteverket, 2000).

인구등록법(Population Registration Act)에 따라 출생아에 대해 해당 병원 및 조산사는 출생신고를 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자녀가 병원이나 조산사의 도움 없이 출생했을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부모가 신고를 해야 한다. 자녀가 인구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세무기관은 등록 기록과 개인식별번호, 성명 기입 양식을 부모에게 다시 보낸다. 부모는

3개월 내에 자녀의 이름을 기입한 양식을 세무서로 보내야 한다. 혼인 시에도 개인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혼인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치(연령, 기혼여부 등)를 개인이 세무서에 요청하면 세무서는 이를 확인하고 혼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이 과정에서 혼인관계에 대한 정보가 세무서에 입력된다(Skatteverket, 2000).

인구등록법에서는 개인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이를 반드시 1주일 이내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만약 거주지를 이전하였으나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가 사회보험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을 관리하는 도로청 등 다양한 관련 기관으로부터 주소 이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카드나 고지서가 개인이 등록한 주소로 보냈을 때 반송되어 오는 경우에도 주소지 변경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다. 혹은 세무기서가 직접 거주지 정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법령에 따라 세무서가 요청하는 경우 건물 및 토지 소유주는 거주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거주지 변경이 확인된 경우 세무서는 개인에게 해당 정보의 수정을 요청하게 되며 지연 신고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계속해서 수정이 되지 않을 시 세무서는 이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자녀 출생, 거주지 이전, 혼인 이외의 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세무서로 전달된다. 자녀의 입양과 양육권에 대한 정보는 법원으로부터, 사망에 대한 정보는 사망 신고를 한 병원 및 의사로부터, 묘지에 대한 정보는 장례를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인구에 대한 정보는 세무서 전산망에서 개인식별번호를 검색코드로 사용하여 빠르고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세무서를 통해 시스템에 등록된 인구 정보는 국세청의 중앙전달등록(Central Notification Register) 시스템으로 보내진다. 이 시스템에는 인구 파악을 목적으로 개인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사람과 민간 등록 이외의 사유로 개인식별번호

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 전체 인구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각 지역의 등록인구 정보를 반영하여 매일 인구 정보가 갱신된다. 스웨덴 인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많은 국가기관들은 중앙전달등록시스템의 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사용기관과 국세청 사이에는 정보사용 등에 대한 협약이 맺어지고 사용 비용은 국세청이 결정한다. 현재 등록인구 정보를 사용하는 기관은 통계청(Statistics Sweden), 경찰청(National Police Board), 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병무청(National Service Administration), 토지청(National Land Survey), 도로청(National Road Administration), 이민청(Swedish Immigration Board),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등 다양하다(표 2-2).

〈표 2-2〉 스웨덴 등록인구 정보의 사용기관

사용기관	사용이유
통계청(Statistics Sweden)	인구 통계를 목적으로 전체 인구 정보 보유
경찰청(National Police Board)	사법제도 수행 목적으로 정보 보유
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	아동수당, 병가수당, 국가 연금 지불 목적으로 정보 보유
병무청(National Service Administration)	군인 징병을 위한 정보 보유
토지청(National Land Survey)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보 보유
도로청(National Road Administration)	운전면허증 소지자,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 보유
이민청(Immigration Board)	비북유럽 국적을 가진 스웨덴 거주 이민자에 대한 정보 보유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	지역 내 취학 아동 등록을 위한 정보 보유

자료: Skatteverket(2000), Population Registration in Sweden.

스웨덴 등록인구체계는 입력된 정보의 정확성을 판단하고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확인, 표본 설문조사 실시, 개인에 의한 직접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

〈표 2-3〉 스웨덴 등록인구 정보 정확성 확인 방법

유형	방법
자동 확인	개인이 기입한 정보의 정확성을 가족관계 정보와 교차 비교함으로써 확인 가능
표본 설문조사	· 개인이 제공한 정보의 정확한 등록을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1996년 Västernorrland 지역에서 10,0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설문 조사가 수행되었고 총 201개의 부정확한 정보가 확인됨
개인 직접확인	스웨덴은 개인 정보 법안(Personal Information Act)은 무료로 개인에게 등록인구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오류 수정을 가능하도록 함

자료: Skatteverket(2000), Population Registration in Sweden.

제3절 프랑스 등록인구

1947년 법령이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에 신원 등록 (identification register)을 포함한 경제·사회통계 수집과 갱신을 위임 하면서 개인에 대한 국가신원등록(RNIPP, Répertoire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Personnes Physiques) 시스템이 시작되었다 (INSEE, 2008). 1974년 정부는 컴퓨터가 가독할 수 있는 국가전자신 분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한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여 1981년에 취소되었다(행정자 치부, 2007).

개인이 국가신원등록시스템에 등록되면 14자리의 국가등록번호(NIR, National Identification Repertory)를 받게 되며, 이 번호는 질병보험 을 포함한 많은 사회보장기관에서 사용하게 된다. 국가신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통계 정보들은 타 행정기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정보와의 매 칭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개인 정보 처리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국가신원등록시스템은 국가 주요기관에서 개인 정보 갱신

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2008년 현재 신생아의 97.2%가 출생 8일 이내에 국가신원등록시스템에 등록되고 있다.

국가신원등록시스템의 등록인구시스템은 프랑스, 프랑스령 국가들, 혹은 그 외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프랑스 거주자 자격으로 사회보장제도에 신청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INSEE는 해외에서 출생하는 프랑스 시민권자에 대한 인구 등록과 갱신 권한을 노령보험기금(CNAV,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에 위임했다. 국가신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각 지역의 인구등록 양식을 통해 입력되는 지역 등록인구시스템으로부터 전달되며, 여기에는 이름, 성, 출생일 및 출생지, 사망일 및 묘지, 국가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INSEE, 2008).²⁾ INSEE의 프랑스 등록인구시스템의 활용 목적은 <표 2-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국가신원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갱신, 국민보건 모니터링에 기여, 국가인구통계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INSEE webpage).

〈표 2-4〉 프랑스 등록인구 시스템의 활용 목적

항목	목적
RNIPP에 등록된 정보 갱신	· RNIPP에 등록된 개인 정보의 풍부함과 정기적으로 갱신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에서 이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사용함 ·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행정처리 혼란 감소에 중요한 역할 담당 · 세금 및 연금 관련 기관에서 개인 자격 심사에 정보를 활용함
국민 보건 모니터링에 기여	· 2003년 유럽 지역의 흡서 이후 매일 사망 인구와 관련된 정보를 국립보건감시국(Institute for Health Monitoring)으로 보내 국민 보건을 모니터링 함.
국가인구통계	· 국가 의사결정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인구 통계 생산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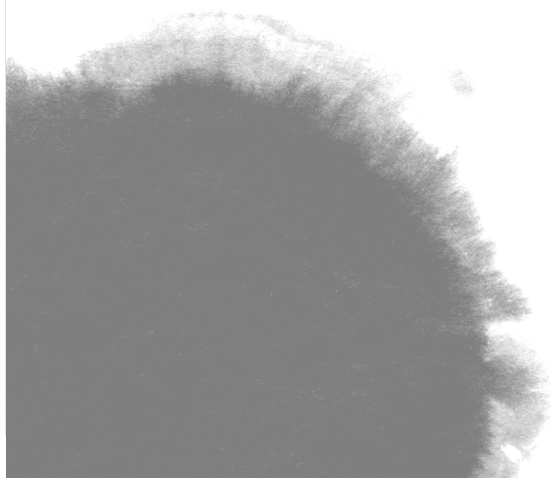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자료: INSEE(2011). <http://www.insee.fr/en/methodes/default.asp?page=definitions/rnipp.htm>

2) 혼인 여부, 자녀 성명, 개인 주소 등은 1982년에 정부의 결정에 따라 등록인구 정보에서 제외되었다(행정자치부, 2007).

프랑스에서는 등록인구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을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있다. 과거 등록인구를 담당하는 각 지방자치 당국은 지역인구에 대한 통계를 서류 형태로 INSEE에 전달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고 처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INSEE는 1999년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전자 데이터 교환(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작업을 수행했다. 이 작업으로 해당 도시와 INSEE 간에 전자링크가 설치돼 매일 신생아 통계가 전달될 수 있었다. 2004년부터 전산화 작업은 중소도시로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08년 말 현재 전체 사망 신고의 75.1%, 혼인 신고의 55.9%, 출생 신고의 99.3% 이상이 전자문서화 되었으며, 전체 등록인구 기록의 82.1%가 전자문서화 되었다. 이렇게 EDI를 통해 INSEE에 입력된 정보와 주요 질병보험 기금에 등록된 정보와의 매칭을 시도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발견하게 되면 지역 자치 당국의 원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2008년 한 해 약 90,000개 이상의 정보 오류가 발견되었고, 수정된 결과가 국가신원등록시스템에 다시 반영되었다.

03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생·산·체·계



제3장 우리나라의 인구통계 생산체계

제1절 인구통계 개념 및 범주

인구통계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인구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상황을 일정한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통계는 협의의 인구통계와 광의의 인구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인구통계는 인구의 규모(volume), 구조(structure) 및 분포(spatial distribution)와 그 변동에 관한 통계를 포함한다. 광의의 인구통계는 협의의 인구통계 이외 인구의 인종적, 사회적, 경제적 속성 등에 관한 통계가 포함된다.

인구통계의 범위는 통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우선 자료 수집방법에 따른 인구통계의 범위이다.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방법과 일반 행정체계를 통해 등록, 신고, 보고되는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 전자로는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으며, 후자로는 주민등록통계, 인구동태통계, 인구이동통계 및 출입국 신고 자료를 이용한 국제이동통계가 있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방법에 따른 인구통계의 범위이다. 인구에 관한 여러 기초자료를 종합적으로 가공 및 분석하여 인구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 규모와 구조 그리고 인구변동요소(출생, 사망, 국제이동)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인구를 전망하는 인구추계가 있다. 인구추계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 그리고 일정한 특성을 가진 인구집단의

향후 규모 및 구조를 전망하는 데에도 적용된다. 이외에도 사망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수명 등을 추정하는데 적용되는 생명표(기법) 등이 있다.

출생, 사망(생명표 포함), 이동 등에 관한 통계는 인구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추계 및 주민등록인구와 같이 전국적인 인구의 규모, 구조 및 분포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와 다르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구통계로서 센서스인구, 추계인구 및 주민등록인구 각각의 작성체계와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제2절 센서스인구 생산체계

우리나라에서 인구센서스는 ‘인구주택총조사’로 부르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인구를 여기에서는 ‘센서스인구’로 표기하기로 한다. 다른 조사와 달리 인구센서스는 일정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실시된다. 그러한 특성들로써 개별성(individual enumeration), 완전성(universality within a defined territory), 동시성(simultaneity), 주기성(defined periodicity)이다. 개별성은 모든 인구는 개인단위로 조사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 완전성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거주하는 모든 인구를 조사하여야 함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조사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동시성은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조사를 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주기성은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으로 조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구센서스는 전 국민을 일일이 조사하기 때문에 누락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자료의 역사가 길고 비교적 많은 경제사회 변수를 포함하는데다 소지역 단위로 제공되고 있어 가장 폭 넓게 사용되는 자료원이다. 따라서 센서스

인구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인구를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자료이다.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인구와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925년 이래 2010년까지 거의 매 5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단, 1944년 및 1966년 센서스는 예외).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조사하는 방대함 때문에 실시조사를 수행하는 조직과 인력규모는 조사의 질 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이 조사 전반을 주관하며, 조사실시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이다. 일반조사구(일반 가정이 거주하는 조사지역)에 대한 조사체계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총관리자), 조사관리자, 조사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별조사구(군인, 수감자, 해외거주자 등에 대한 조사)는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등에서 실시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인터넷조사, 조사원 방문면접조사(응답자 직접 기재 방식 병행) 등을 적용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총 50개 항목(전수 19개, 표본 31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조사항목 수와 종류는 센서스 연도별로 다르다. 그러나 인구 규모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성,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등 기본항목들은 매 인구주택총조사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다.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시기는 2010년 11월 1일이며, 인구에 관한 전수집계결과는 2011년 5월 31일로 일차적으로 인구통계를 접할 수 있는 기간은 약 7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주택에 관한 통계는 2011년 7월로 약 9개월 그리고 인구가동, 통근통학, 주거실태, 경제활동, 활동제약 등 부문별 표본조사 결과들은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다(통계청, KOSIS).

〈표 3-1〉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전수조사 (19항목)	표본조사 (31항목)
인구 (28)	① 성명 ② 성별 ③ 나이 ④ 가구주와의 관계 ⑤ 교육정도 ⑥ 혼인상태 ⑦ 국적 ⑧ 입국연월	① 아동보육 ② 출생지 ③ 1년 전 거주지 ④ 5년 전 거주지 ⑤ 활동계약 ⑥ 통근통학 여부 ⑦ 통근통학 장소 ⑧ 이용교통수단 ⑨ 통근통학 소요시간 ⑩ 사회활동 ⑪ 경제활동상태 ⑫ 종사상 지위 ⑬ 산업 ⑭ 직업 ⑮ 현 직업 근무연수 ⑯ 근로장소 ⑰ 혼인 연월 ⑱ 총 출생아 수 ⑲ 추가계획 자녀 수 ⑳ 고령자생활비원천
가구 (13)	① 가구구분 ② 사용방수 ③ 주거시설형태 ④ 점유형태 ⑤ 건물 및 거주 층 ⑥ 주인가구 및 타지 주택 소유여부	① 거주기간 ② 난방시설 ③ 수도·식수사용형태 ④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⑤ 교통수단보유·이용현황 ⑥ 주차장소 ⑦ 임차료
주택 (6)	① 거처의 종류 ② 주거용 연면적 ③ 건축연도 ④ 총 방수 ⑤ 주거시설	① 대지면적
시도(3)		시도별 3개 항목

자료: 통계청(2011), KOSIS.

제3절 추계인구 생산체계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센서스인구를 기준인구로 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한 것은 1961년으로 조성법에 의해 출산율을 고위, 중위, 저위로 가정하고 추계하였다. 이 후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와 연계하여 5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다. 전국 인구 이외에 시·도별 장래인구를 추계하여 공식통계로 발표한 것은 1995년 센서스부터이다. 가장 최근에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보정)하여 2005~2050년까지의 전국 인구를 추계하였으며, 현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장

래 인구를 추계하고 있다.

인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므로 정책입안자, 보건공무원, 시장분석가 등은 적어도 연간통계를 필요로 하나, 현실적으로 매년 인구센서스(또는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비용 등 문제로 한계가 있다. 인구추정은 비용이 절약되며,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 추정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추정은 두 인구주택총조사 사이 연도에 대한 추정(intercensal estimates), 인구주택총조사 이전 연도에 대한 추정(postcensal estimates),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연도에 대한 추정(projections)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연도의 인구에 대한 추정을 인구추계라 한다.

인구추계(projection)는 예측(forecast)과 구별된다. Grauman(1959)에 의하면, 어느 특정 시기 인구에 대한 추계(projection)가 실제와 같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루어 질 경우 이를 예측(forecast)이라 한다.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실제 인구를 추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석적 관계만을 제시하는 모델은 인구추계가 될지언정 예측이 될 수 없다.

인구추계는 지리적으로 전국, 지역이나 성별, 연령, 종족, 혼인상태, 교육정도, 고용상태, 가족 등 추계대상 인구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는 성, 연령, 지병(광역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다.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와 같이 상주개념(*de jure*)과 현주개념(*de facto*)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상주개념 인구추계는 추계대상 지역에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를 추계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추계에서는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주개념 인구추계는 상주지와 관계없이 추계당시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인구를 추계하는 것이다.

자료가 불완전할수록 인구추계 대상기간이 길면 그 만큼 인구추계 결

과가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인구추계는 인구가 과거나 현재로부터 일정한 질서를 가진 방법으로 변화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미래 인구의 변화는 불확실한 것으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추계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의 인구추계는 출산력 변동에 대해 고위, 중위, 저위로 가정하여 실시한 바 있다.

인구추계방법으로는 수학적 인구추계방법, 경제학적 인구추계방법 및 조성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인구추계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고 있다. 이 방법은 동시출생집단(Cohort)에 인구변동 요인의 향후 변동정도를 반영하는 인구균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³⁾ 즉,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파악한 인구(성별·연령별 인구)에 대해 인구센서스 사후조사(post-enumeration survey)에 근거해 누락·중복·왜곡을 보정하여 기준인구(base population)를 작성한 후, 여기에 출산율, 사망률 및 국제이동의 향후 변동 가정을 성별·연령별로 적용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이다. 조성법은 UN 등 국제기구 및 세계 대부분 국가(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장래추계 인구는 조사 누락이 보완된 인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인구 규모가 가장 현실과 가깝다고 인식되는데다가, 성 및 연령별 인구자료가 매년 작성되어 우리나라의 공식 인구 자료로 사용된다. 하지만 장래추계 인구는 본질적으로 인구변동 요인에 대한 변화 가정을 토대로 추계(project)된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인구와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는 문제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누락 및 중복을 보정하여 당년도 인구로 확정하며, 이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직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후)의 인구를 추정(estimation)하여 확정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한 연도와 과거연도의 인구는 우리나라 확정인구로

3) $P(t+n) = P(t)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 D 사망자,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간주할 수 있으나, 장래인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인구변동요소(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의 변화를 가정하여 추계한 전망치일 뿐이다. 예를 들어, 출산력 변화는 최고점 및 최저점 없이 이들 두 점을 향해 변화하는 양방향의 모멘트가 상호 작용하여 균형을 이루면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조건, 문화적 가치, 기대감의 변화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망률도 사회·경제적 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이들 요인들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국제인구이동은 추계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경제상황, 관련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변동 예측이 어렵다. 출산력이나 사망력에 비해 국제인구이동의 향후 변동을 예측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더 곤란하다. 그 이유로는 국제이동은 추계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경제상황, 관련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제약점으로는 추계인구 역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서 인구를 기초로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인구특성이 강하며, 법적 및 행정적 인구와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제 행정부처에서는 정책지표를 산정하거나 정책수요를 추정하는 경우 추계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경향이 존재한다. 추계인구는 광역자치단체로 작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자치단체 이하의 소지역의 인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지역 이외에 인구의 기본특성별로 인구를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제4절 주민등록인구 생산체계

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부(公簿)에 기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법에 근거하여 주민정보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이동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위한 제도이다(전미영 외, 2009). 주민등록인구는 1962년부터 실시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매년 연말기준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한국인을 집계한 인구이다(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물론 1992년에 주민등록전산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신뢰할만한 전국 자료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된 인구를 신속하게 집계할 수 있게 된 가장 중요한 계기는 주민등록의 전산화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전산화사업은 1985년 5월 행정전산망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국가인력자원정보의 효과적 활용체계 구축 및 신속·정확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단일 권의 행정전산망을 기반으로 주민자료 원시정보 입력, 민원처리, 주민등록 사무처리, 관련기관 지원(민방위, 인력동원), 각종 현황·통계 업무를 처리하는 전국 주민행정망을 구축되었다(전미영 외, 2009). 구체적으로 1989년 주민등록표의 전산화DB, 1991년 온라인 서비스 개시, 2000~2001년 시·군·구 주민행정전산화, 2001~2002년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구축 및 2003년 전국 동시 운영 등이다.

이와 같은 전산화를 통해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되는 출생, 사망, 국외이주, 말소 및 재등록, 전·출입 등을 처리하여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2002년부터 생산하고 있다(통계법 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일반통계로 지정).⁴⁾ 주민

4) 주민등록인구 통계 작성 이전에는 조사를 통해 지역별 인구가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등록은 시·군·구(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행정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민등록법 제1조). 여기에서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한 주민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내국인(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 집계, 말소자 제외)과 출입국 신고법에 의거하여 외국인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외국인(3개월 이상 체류자)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작성체계로는 읍·면·동 행정기관별로 주민등록표 상 내국인을 전산 집계한다. 구·시·군에서는 읍·면·동별 내국인을 취합하고, 외국인등록표에서 외국인을 집계한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구시군 및 읍면동별 자료를 종합하여 해당기관별로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최종확정하고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를 통계청에서 취합하여 전국 주민등록인구통계 보고서로 발간한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인구 통계는 연말(12월 31일 24시)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산율, 사망률 등 각종 지표의 산정에 유용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 연앙인구를 당해년 평균인구의 개념으로도 제공하고 있다.⁵⁾ 주민등록인구 통계에는 행정구역(시·도, 구·시·군, 읍·면·동)별로 성·연령별 인구 및 세대수 등이 포함된다. 주민등록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거주지별 전출입일자, 학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거한 주민등록인구는 센서스인구와 마찬가지로 소지역별로 작성이 가능하며, 더 나아가서는 센서스인구에서와 달리 조사나 자료처리과정에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은데다가 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인구조사를 통해 행정구역별 인구를 작성하였다. 이후 5년 간격별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작성하였으며, 센서스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에는 상주인구 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였다(통계청, 2002).

5) 예로 2010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09년 말 인구 + 2010년 말 인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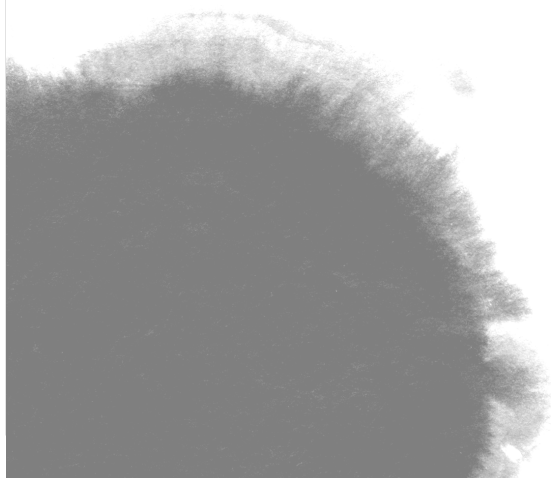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년(매월) 작성할 수 있어 시의성 수준이 매우 높다. 주민등록인구는 다 목적의 성격을 가진 행정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비해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 특히 다른 행정목적의 편익을 감안하면 통계작성에 드는 순비용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작성함으로써 인구주택총조사 과정에서와 같은 사생활 침해, 조사 거부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비용과 조사갈등 등의 측면에서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에서도 같이 등록자료를 활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서우석·이명진, 2008).

주민등록인구도 몇몇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제한점들로는 일부 인구는 실제 거주지 혹은 상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지역별 인구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학업(유학), 취업 등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 혹은 국가로 이동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때문이다.⁶⁾ 게다가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 허위신고, 주민등록 말소, 출생과 사망의 미신고 혹은 지연신고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실제 거주 인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992년 주민등록전산화 이후에도 주민등록인구가 공식인구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인구를 부정확하게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후술하도록 한다.

6) 이러한 문제점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도, 그 지역에서 조사에 응하지 않고 이주 전의 본가 등에서 조사되고 있기도 하다.

04

주민등록전반망 체계 및 활용



제4장 주민등록전산망 체계 및 활용

제1 절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연혁

그 동안 주민등록 전산화는 여러 단계를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민등록관리 전산화 시범사업 추진 등 전산화 준비(1978~1988), 시스템 개발, 자료 입력 등 주민등록전산망 구축(1988~1992), 거주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전산 발급 서비스(1991), 선거인명부 등 선거업무 전산화(1992), 거주지 무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 전출신고 없이 전입 1회 처리(1994), 전출입자료 동시처리 서비스(1995), 주민등록표의 사진·지문 및 한자성명 전산입력(1999~2000) 등이 추진되었다.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는 주민등록법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하여 구축되었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증발급센터 구축(1997) 및 운영(1998.12), 시도 지역전산본부(16개 지역, 주전산기 톨러런트 78대) 폐지,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발급(1999~2000) 등이 추진되었다.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이 2001년에 구축된 이후 이용업무 수요를 조사하여 2002년부터 민원업무 106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주민등록 전산정보 백업시스템으로 국가기간정보시스템 공동백업센터(주민·국세·관세)가 2001~2002년간에 구축되어 가동하고 있다. 2002년에는 PC급 서버로 된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이 폐지되고, 대신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이 구축되어 2003년에 개통되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의

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서비스가 2000년 이래 계속 확대되어, 2009년 1월 기준으로 무인발급기가 총 1,853대 설치되었다. 2003년에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시스템이 개발 및 구축되었으며, 시범서비스를 거친 후 200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이 구축되었다. 2004년에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민등록표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4-1〉 주민등록 전산화 연혁

연도	내용
’86.4~’87.3	주민관리전산화 시범사업 실시(전국8개 읍면동)
’87.2	행정전산망 종합계획 확정
’88.5-9	주민등록 자료입력(’89년 전산입력 완료) (5,215만 건→예대: 1,090 개안: 4,125)
’91.1	해당 읍면동내 대민서비스 실시(최초 등·초본 전산발급)
’91.11	전국 온라인망 연결
’94.7.1	전출입 폐지, 전입신고 1회 제도 도입
’95.5.15	통합 전·출입(전입1회) 및 거주지무관 등·초본 발급
’97~98.11	주민등록증발급센터 구축(H/W도입, S/W전면 재개발)
’99.3	전국 읍면동에서 화상자료 입력
’99.5	전국 읍면동에서 한자 입력
’99.9.16~’00.5.31	주민등록증 일제경신(현행 플라스틱증) : 3,514만매
’00.12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주민요약 DB 구축운영
’01.8~12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구축
’02.2	주민등록 공동이용시스템 서비스 개시
’02.1~6	주민등록 백업센터 구축 ※ 운영개시 : ’02.9
’02.1~12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 시군구로 전환 사업 추진 - 5개 시군구 시범사업, 자료전환 - File 형식 : C-ISAM → RDBMS
’03.1~9	읍면동 주민등록시스템 → 시군구 전환 확대사업 추진 - 전 시군구 확대(자치정보화 예산으로 추진) - 자료구조 변환(File 형식 → RDBMS(오라클))
’03.2~9	주민등록정보센터 구조개선사업 추진 - DB 재구축 및 응용프로그램 전면 재개발 - 통신망 변경(X.25 소켓방식 → TCP/IP LAN 방식)

〈표 4-1〉 주민등록 전산화 연혁(계속)

연도	내용
'03.9.10~14	전국단위 주민등록 DB 변환(개통 : '03.9.15)
'03.2~'04.5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개발
'04.4.20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터넷발급서비스 전국 실시
'04.7~11	주민등록증 경신 타당성조사 및 발전방향 연구
'04.8~12	주민등록표 수기폐지를 위한 S/W개발
'05.6~9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05.5~'09.12	주민등록표 원장 이미지 DB구축 사업 - '05~'06년(29개 시군구), '07년(76개 시군구 구원장), '08년(58개 시군구), '09년(69개 시군구) → 232개 시군구
'05.9~'07.7	주민등록증 발전모델연구 및 기본기능 시험연구
'06.7	주민등록 주전산기(H/W) 정부통합전산센터(대전. 광주) 이전
'08.2	- 호주제도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전국 확대 실시(거주지 무관)
'08.8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문자셋 변경 - 기존 : KSC-5601(완성형 문자셋) - 변경 : MSWIN-949(확장한글 문자셋)
'08.7~12	주민등록시스템 도로명 주소 변경 구축 사업 ※ 도로명 주소 병기를 위한 기반 마련
'09.1~2	주민등록시스템 한자시스템 표준화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한자로 표준화
'09.3.18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 거주지 이동 신고서식 변경에 따른 전산처리 화면 변경 - 제3자 등초본 발급사항 SMS신청자 입력 및 우편통보서 출력 화면 추가
'09.10.2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 무단전출직권말소 폐지관련 변경 -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관련 변경 - 프리미엄 등기제 관련 변경
'09.10.14	온라인 전입신고 전국 시행 -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를 통해 온라인 전입신고 신청
'09.08.0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 결혼이주자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방법 개선(신청서 작성 않고 전자서명 입력) - 전입자유면동채등록 신고서 신주소 자동배송 신청(우정사업본부 연계)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7.3).

제2절 주민등록전산망 체계

1. 주민등록전산망 구성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입력, 통계 작성, 활용 및 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전산망 시스템의 구성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전산망은 운영시스템별로 관장하는 자료의 구성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에 관한 기본자료가 생성되는 가장 기본단위인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4-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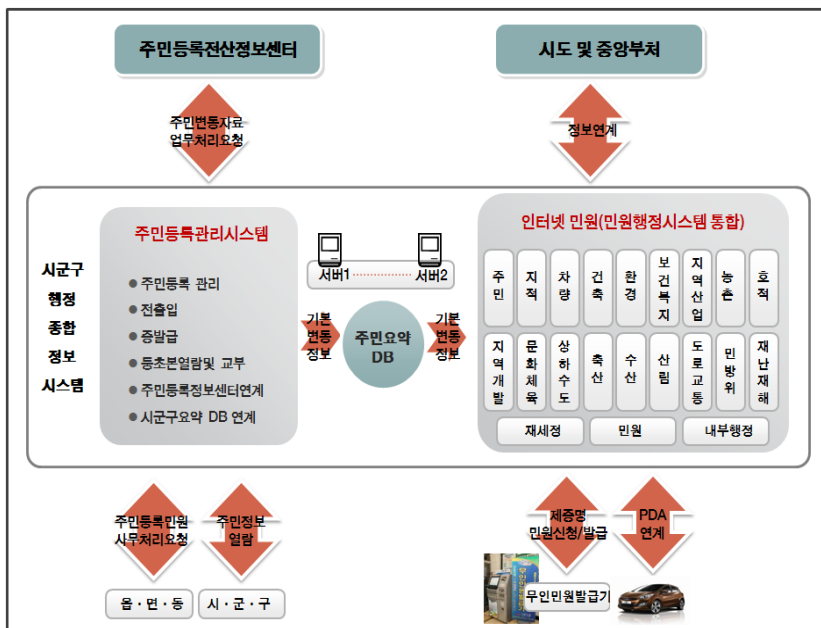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과 민원행정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성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업무는 주민등록 관리, 전출·전입 업무, 다양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 등·초본 열람 및 교부 업무, 주민등록정보센터와 연계 업무, 시·군·구 요약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이다. 이들 업무와 관련된 기초자료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입력된 주민등록에 관한 일련의 업무와 연관된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구축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포함된 업무별 정보는 기본 정보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주민등록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변동된다. 이러한 변동된 정보는 인터넷 민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원행정시스템과 통합된 형태(주민시스템부터 지적, 차량, 건축, 환경, 보건복지, 민방위, 도로교통 등)로 연계·구성된다(그림 4-1의 박스 안에 구성된 시스템으로 전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된다).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체 주민등록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최상위 시스템인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있다. 이들 시스템들은 주민과 관련한 정보가 변동(변경)되거나 관련 업무의 처리를 요청할 경우 상호 연동하여 작동된다. 시·도 및 중앙부처에서 주민등록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제공된다.

〔그림 4-1〕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성도



2.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주민등록시스템은 232개 시·군·구의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주민등록 전산정보센터 통합DB(R-DBMS)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주민등록전산망에는 엄청난 정보(개별 신상정보, 회상정보, 이력정보 등)가 연계·구성되어 있어 정보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 그러나 정보 보안 측면에서는 아무리 높은 강도의 정보보호시스템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정보를 서로 연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

〈표 4-2〉 주민등록전산망 상 주요자료(내용)

시군구 주민등록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 통합DB
◦ 주민등록 세대 및 개인 정보(신규, 출생등록 자료, 재등록, 정정, 말소·거주불명등록, 국외이주 자료) ◦ 주민등록 전출입 정보 ◦ 주민등록증 자료 정보 - 신청, 발급, 교부, 분실, 회수, 등기 배송 자료 - 신청현황, 발급현황, 회수현황 등 관리정보 자료 ◦ 주민등록 정보열람 및 증명발급 정보 -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 열람 이력자료 - 주민등록정보센터 개인정보 열람 이력자료 - 한글, 영문 등(초본) 발급이력 정보 - 일괄자료 검색 및 타읍면동 자료제공 내역 자료 ◦ 주민등록 관련 자료 정보 - 기관기본사항, 특수주소, 기관코드, 행정동(리)자료 - 세대(개인)명부, 직권정리 이력, 현황통계, 행정구역 변경 자료 ◦ 주민등록 과태료 정보 ◦ 주민등록 화상자료(사진, 지문, 인영) ◦ 시군구 인감 정보 - 내국인 인감관리 대장자료 - 내국인 외(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인감관리대장자료 - 인감작업 관리자 정보자료 - 인감증명 열람 및 발급내역(내국인, 내국인 외) 자료 - 인감대장 명부, 통보서 관련 관리 정보 자료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정보(개별법에 의거한 정보임) - 취학아동, 가족관계등록사항 통보, 선거인 자료 ◦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변동자료 내역전송 ◦ 주민요약 DB - 주민등록 개인, 세대 기본 자료(21개 타 행정업무에 이용)	◦ 주민등록 세대정보: 세대구성에 관한 정보 ◦ 주민등록 개인정보: 개인의 성, 연령, 주소에 관한 정보 ◦ 주민등록 개인정보 변동 이력정보(주소,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 주민등록증 발급, 분실, 회수, 습득, 등기배송 정보 ◦ 내국인 외(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 재외국민) 인감 정보 ◦ 주민등록 화상자료(사진, 지문, 인영) ◦ 주민등록 통계 및 상황 자료(인구이동, 일일마감, 상황통보서 등) ◦ 기타 병역정보 및 주민등록 관련 코드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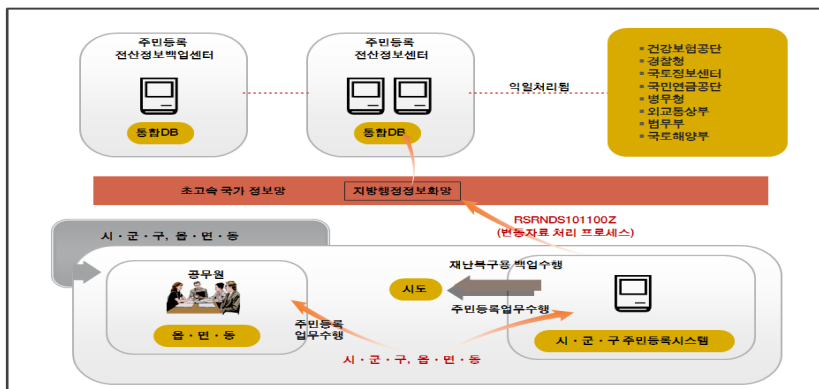
자료: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7.3).

제3절 주민등록전산망의 자료 형성 및 활용

1.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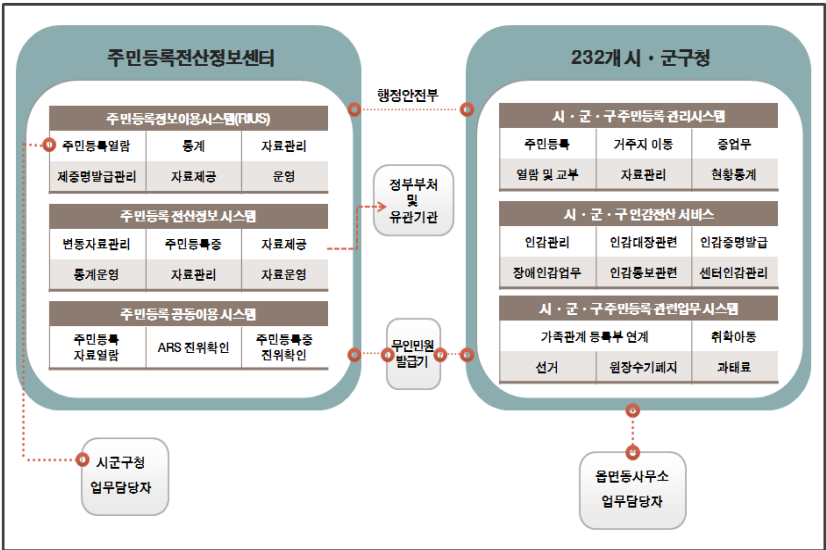
주민등록정보의 입력 과정은 시·군·구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네트워크 현황을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2]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정보가 입력되는 과정과 입력된 정보가 어떻게 주민등록전산망에 모여져서 처리되는지를 보여주는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시·군의 읍·면·동에서 신고된 주민등록관련 사무는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에 축적되면서 동시에 재난복구용 백업(back-up) 작업도 동시에 수행된다. 이렇게 축적된 주민등록정보는 변동자료처리 프로세스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백업센터에 연계된다. 이들 두 시스템은 초고속국가정보망과 지방행정정보화망을 통해 연계되어 있다. 주민등록자료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화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변동자료처리 프로세스를 거친 정보들이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하는 외부기관에 익일에 제공된다.

[그림 4-2] 시군구 및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의 네트워크 현황



주민등록전산망을 총괄하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업무구성을 파악하면 주민등록정보가 어떻게 입력되어 통계 처리되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3]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업무구성에 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3]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업무 구성



또한 232개 시군구청에서 관장하는 주민등록관련 업무 역시 3개의 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 시군구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인감전산서비스, 주민등록관련업무시스템으로 구분되어 각각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표 4-3〉 232개 시군구청의 주민등록관리시스템별 세부현황

구분	시·군·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시·군·구 인감전산 서비스	시·군·구 주민등록 관련 업무 시스템
서비스개요	- 주민등록 신고업무 - 주민등록 관련업무 - 주민등록 연계업무	- 주민등록관련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련 업무
주요 업무	- 주민등록(전출입증) - 거주지 이동 - 주민등록증 처리 - 열람 및 교부 - 자료관리 - 관련 업무	- 인감관리 - 인감대장관련 - 인감증명발급 - 장애인감업무 - 인감통보관련 - 센터인감관리	- 가족관계등록부 연계 업무 - 취학아동 관련 - 선거 - 원장수기폐지 - 과태료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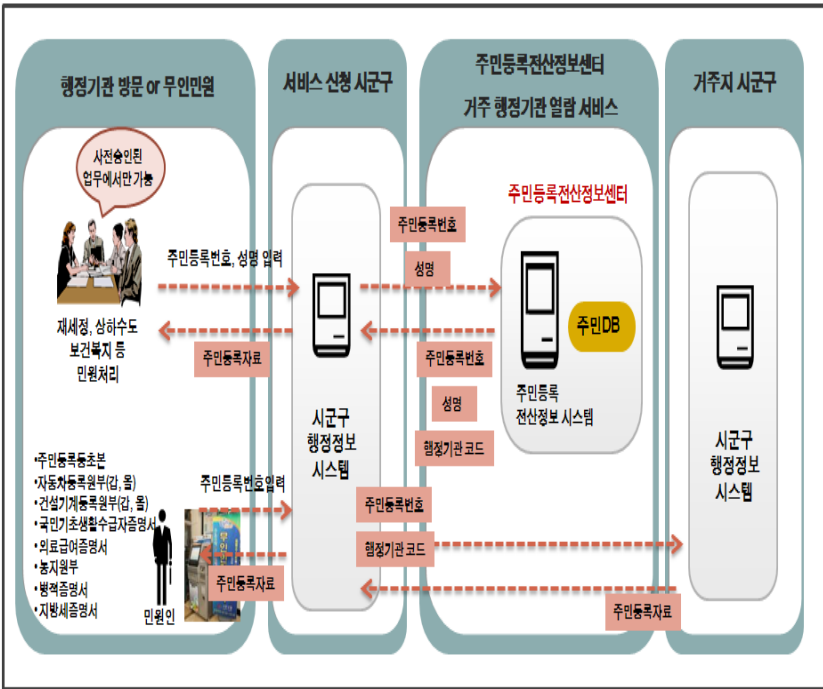
이렇게 구성된 업무는 시군구청의 업무 담당자가 정보를 요청하면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으로 연계되고, 읍면동사무소의 업무담당자가 입력하는 시스템은 시군구 주민등록 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한편 무인정보 시스템에서 발급과 관련한 업무는 양 시스템 모두에 연계되어 정보를 모아지면, 국가기관에서의 요청 업무는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와 연계되어 정보가 제공된다.

2.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활용

주민등록관련 정보는 시군구의 주민등록요약DB의 정보 프로세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데, 먼저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무인민원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사전에 승인된 업무에 한해서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정보가 필요한 관련 업무를 일부 열거해 보면, 주민등록등초본관련, 자동차등록원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지방세 증명서 등이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서비스를 신청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정보를 보내 코드가 일치하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서

비스 신청 시군구와 거주지 시군구가 다를 경우에는 서비스 신청 시군구에서 거주지 시군구의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으로 정보가 간 다음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연계되는 구조로 정보가 제공된다.

[그림 4-4] 시군구 주민요약 DB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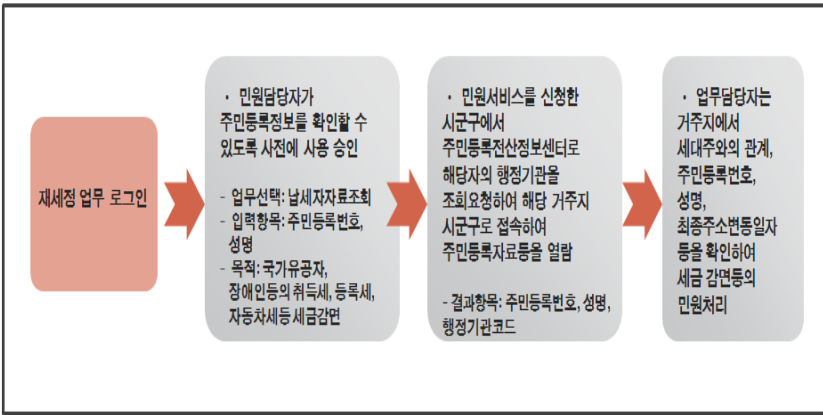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업무담당자가 제·세정 관련 업무를 진행한다고 했을 경우, 로그인하면 사전에 사용승인이 되어 있으므로⁷⁾ 승인이 나고, 업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업무목적을 입력하면, 민원서비스를 신청한 시군구에서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로 해당자의 행

7) 시군구의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의 경우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2년 이내에는 업무 이동이 없도록 하는, 적어도 2년 동안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지속해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정기관을 조회 요청하여 열람승인을 해준다. 그 결과 업무담당자는 거주지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성명, 최종주소변동일자 등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4-5] 시군구 주민요약 DB 이용현황 예시: 재세정 과세자료조회 업무



3. 주민등록 자료 구축의 문제점

2008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행정자치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이 다른 11만 명을 전원 구제했다. 이는 행정기관과 법원 등 국가 기관이 주민등록과 호적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서로 다른 국민 전원을 구제한 사례인데, 주민등록자료의 보편적 사용을 위한 조치였다. 이는 행정자료 간의 불일치를 정부가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정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정부는 호적과 주민등록상 기록의 최초 신고 단계부터 전산 입력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과 수작업으로 실시하여 오류를 규명하고, 개인신청을 받아 정정해 준 뒤 금융계좌, 자동차등록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서류의 기록을 일괄적으로 일치시켰다.⁸⁾

이렇듯 주민등록자료는 담당공무원이 입력하는 과정에서의 오류, 위장전입에 따른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의 차이에서 오는 지역인구 자료의 오류, 2009년 하반기부터 실시된 주민등록무단전출 직권 말소제도 폐지에서 오는 ‘거주불명자’ 처리 방안과 관련한 자료의 불일치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⁹⁾ 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 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여 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자료의 현실 일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1년에 2차례 실시되던 것을 2011년부터는 1년에 4회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1년 3분기의 경우 8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 반 동안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 거주지에 사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제3자의 민원 제기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후자의 예로, 민원인이 어떤 대상을 지목하여 그 사람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실제적 거주지가 다르므로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해주시기를 바

8)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는 현행법상 주민등록이 아닌 호적에 등재된 번호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면서 “하지만 11만 명 가운데 상당수가 호적 번호 대신 그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해온 주민등록상의 번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판단, 재산권 또는 정년 판단 등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만 없다면 주민등록상의 번호로도 정정해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9) 후술하겠지만 2009년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민등록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4월 22일(수)부터 입법예고한 바 있다.

란다는 민원을 요청하며, 관련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지역에 위장전입자가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중·고등학교 배정 등)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는 민원이나 최근에는 추심원(빚을 대신 받아주는 회사)에서 자신들의 목적으로 위해 수백 통의 민원을 대규모로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제3자가 제기하는 사실조사 민원의 경우 팩스로 신청되는 경우를 제한하고, 직접 와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변환하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한편, ‘거주불명 처리’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센서스 자료와의 불일치 경우가 있다. 농촌지역에서 사망했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나 거주지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직권말소가 아닌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되살아나는 경우가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거주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후 1년이 지나도 당사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해당자는 주민등록거주지의 동사무소 주소로 거주지가 옮겨져 ‘거주불명 등록’으로 유지하기 때문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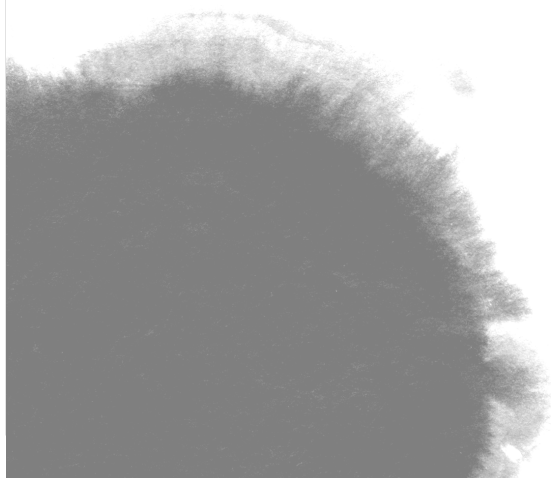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전술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전산망에는 개인신상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가 한통으로 축적되어 있다. 물론 정보보안을 위해 정보유형에 따라 시스템 자체를 따로 관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정보 보완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정보 자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주민등록전산망의 ‘무계열기’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장 기본적인 정보만을 주민등록전산망에 담고, 나머지 정보는 전혀 다른 시스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실제 2011년 6월 서울의 무상급식선거과정에서 선거인 명부 확인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직권말소되었던 사람들이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자체가 되살아나 지금까지의 주민등록자료나 혹은 인구자료와 차이가 나타났다.

행정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주민등록관련 정보는 최소화해서 공통DB에 축적하고, 나머지는 아예 분리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향후 개인의 정보보호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관리하는 정보주권에 대한 의식도 점점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주민등록 전산망의 방대한 정보체계를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05

주민등록인구 변동 요소



제5장 주민등록인구 변동 요소

앞서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대장 상 내국인과 외국인등록표 상 외국인을 합한 개념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로 주민등록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체계뿐만 아니라 외국인등록체계 상 발생 가능한 오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는 주민등록인구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요인들을 크게 주민등록과 외국인등록으로 구분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다음 장에서는 주민등록인구의 정도를 분석할 것이다.

제1절 주민등록 변동요소

주민등록법 제6조에서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주(거주지)를 가진 주민이 등록 대상이 된다(외국인은 예외).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주민의 등록 또는 그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여기에서 주민 등록을 변경시키는 요소로는 전입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록신고, 주민등록 말소 등이 포함된다. 이를 특정지역 주민등록 인구로의 등록과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인구로부터 말소(제외)로 구별해볼

수 있다. 전자의 등록은 거주지 변동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전입 신고, 사건발생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출생신고, 그리고 말소 후 재등록을 포함한다. 후자의 말소는 신고말소(무단전출에 대한 주민신고, 사망신고), 직권말소(허위신고, 무단전출, 사망, 이중등록, 국외이주, 현지이주, 국적이탈), 기타말소(이의신청 말소, 기타말소) 등으로 구성된다.

〈표 5-1〉 주민등록인구 변동요인

	주민등록	등록말소
변동 요인	- 전입신고 - 출생신고	- 신고말소: 무단전출에 대한 주민신고, 사망신고 - 직권말소: 허위신고, 무단전출, 사망, 이중등록, 국외이주, 현지이주, 국적이탈 - 기타말소: 이의신청, 기타말소

1. 주민등록

가. 출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생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한 신고로 같음하여 주민등록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4조).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에는 신고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그 신고사항을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에 따라 관계 사항을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14조).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않을 경

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 및 제122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51조). 출생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그 곳은 시·읍·면이며 신고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동이 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생신고는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주민등록인구를 과소 혹은 왜곡시킬 수 있다. 법정 출생신고기간이 국내에서 신고 시 30일 및 국외에서 신고 시 3개월이므로 익년 1월말 또는 3월말까지의 신고를 포함하여야 하며, 그 경우 전년도 출생을 그 기간까지 신고한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인구는 연말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법정 기한 내 신고이든 지연된 신고이든 모두 출생연도를 넘긴 출생아는 당년도 주민등록인구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생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에 출생과 사망 신고 모두 누락되는 경향이 높으나 출생 즉시 사망한 인구는 주민등록인구에 계상되지 않으므로 인구규모면에 영향일 미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출산율과 사망률 등 지표의 값은 부정확해질 것이다.

나. 전입신고

주민은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고의무자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 16조). 신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은 전출대상자가 세대원 전원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의 일부 전출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의 일부의 전출인 경우에는 전출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지체 없이 정리하여 신거주지에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이송하여야 한다. 신거주지에서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가 이송되어 오면 전입신고서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 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함으로써 신거주지의 주민으로 등록된다.

한편,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전입신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등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와 반대로 학업, 취업 등을 목적으로 실제로 이동하여 30일 이상 상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전국 인구수는 차이가 없을지라도 지역별 주민등록인구는 실제 상주인구와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주민등록인구만의 오차를 발생시키는데 국한되지 않는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17조에서는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인감증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각종 행정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한다.

2.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

주민등록 말소는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민등록이 있으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행정관서의 주소로 등록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은 신고에 의한 것과 직권에 의한 것으로 구분된다. 무단전출은 신고 혹은 직권에 의해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다. 사망은 신고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말소된다. 국외이주·현지이주·국적이탈 및 이의신청은 직권에 의해 정정 혹은 말소된다.

가. 무단전출

말소제도는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항상 명확하게 파악’ 하는데 있기 때문에 주민신고사실과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거주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주민등록제도의 원래 목적을 유지 하는데 있다(행정자치부, 2007).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 이전에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그 세대 구성원에 대하여 무단전출 말소를 신고하여 말소가 이루어졌으며(신고말소), 또는 주민의 말소민원 제기 등에 따라 읍·면·동 사무소가 대상자의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최고(7일), 공고(7일), 직권말소, 통지(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직권말소)하였다.¹¹⁾ 이러한 말소제도는 말소자의 기초생활보장, 채권자 말소요구 문제 등으로 인하여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

적되었다.¹²⁾

이에 따라 2009년 10월 2일 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주민의 거주사실과 주민등록표를 대조 확인하고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면 주민등록을 정정 혹은 말소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즉, 거짓전입 및 무단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다. 특히,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옮겨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다.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일정한 과태료를 내야한다. 한편,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및 수감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는다. 물론 말소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현 거주지에서 언제든지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거주불명 등록자는 2010년도부터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

-
- 11) 현실적으로 말소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행정자치부, 2007). 첫째, 수배, 빚 독촉, 벌금 부과 등으로 인하여 거소 노출을 꺼려 일부러 말소자로 남아 있거나, 행방불명 또는 가출로 인하여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 둘째, 채무자 압박, 채권추심 종료 결혼처분, 공시송달 재판진행, 건물 소유자 재산권 행사 등 사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가 말소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셋째, 선거, 학교배정, 보상금을 노린 허위전입, 교부세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늘리기 등에 대한 대응 조치의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 12) 주민등록 말소자가 64만 명으로 인구 100명 중 1.25명 정도로 많은 비율이며, 이들은 대부분 취약계층으로서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 등 제3자 요구에 의한 말소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취약계층의 말소율이 현저히 높아진 점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말소 제도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제기되어 왔다(세계일보, 2006년 12월 17일 : 행정자치부, 2007에서 재인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관할하는 읍·면·동의 주민등록인구로 포함되어 공표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이 무단전출 말소자가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과소계상되는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지역별 인구를 왜곡시킬 수 있다.

나. 사망신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망의 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로 같음하여 사망자의 주민등록표 상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신고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에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을 변경한 즉시 주민등록지에게 통보하여 말소토록 한다.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출생 신고 누락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말소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사망의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으며, 그 곳은 시·읍·면이며 신고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관할 동이 될 수 있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신고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신고하거나,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사망은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¹³⁾ 사망을 법정 기한 내에 신

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민의 거주사실을 조사하여 최종적으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면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법 제20조).

사망의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허위신고는 주민등록인구를 과소 혹은 왜곡시킬 수 있다. 법정 출생신고기간이 국내 신고 시 30일 및 국외 신고 시 3개월이므로 익년 1월말 또는 3월말까지 전년도 사망을 신고한 비율은 거의 100%에 육박할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 인구는 연말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으므로 법정 기한 내 신고이든 지연된 신고이든 사망연도를 넘겨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년도 주민등록 인구에는 그대로 포함되어 과대계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 국외이주 · 현지이주 · 국적이탈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신고는 이민을 위한 여권발급신청 전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주민등록표에 “국외이주신고”라고 신고일자와 함께 기록한다. 법무부장관은 이민출국자가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이민출국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표에 “이민출국말소”라고 기록한다(주민등록법 제19조).

외교통상부장관은 현지이주를 한 사람이 있으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현지이주자의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표에 “현지이주말소”라고 기록한다(주민등록법 제19조).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

13)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제97조).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국적법 제14조).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국적법 시행령 제18조) 주민등록 말소절차를 거친다.

국외이주, 현지이주 및 국적이탈이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주민등록인구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내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불법으로 신고 없이 사실상 이주하거나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가 과대하게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라. 이의신청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정정이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처분일 또는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되면 주민등록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이상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에 대한 통계는 행정안전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한 연구보고서에서 2001~2006년 간 주민등록말소 현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행정자치부, 2007). 이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는 2001년 543천명에서

2003년 591천명까지 증가한 후 2006년 497천명으로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직권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는 2001년 254천명에서 2005년 295천명으로 증가한 후 2006년에는 249천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년 10월 4일자로 총 46만 6천 명의 말소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편입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말소자의 추이는 사회 현상과 관련 제도의 변화에 따라 변동할 것이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행정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반영되나, 말소 대상이면서도 말소자로 파악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를 왜곡시킬 것이다. 앞서 설명한 주민등록인구의 변동요인별로 어느 정도 누락 등이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제 변동요인들의 결과가 종합된 정도를 분석할 수 있을 뿐이다.

〈표 5-2〉 주민등록 말소조치 현황, 2001~2006

(단위 : 명)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543,226	545,303	591,154	579,448	548,759	497,124
신고말소 소계	288,532	290,797	298,348	284,224	298,518	270,147
무단전출	41,299	43,378	50,687	39,390	33,235	31,537
사망	247,233	247,419	247,661	244,834	265,283	238,610
직권말소 소계	254,456	254,352	292,360	294,278	294,479	249,479
허위신고	8	4	15	14	2	-
무단전출	224,632	227,148	259,637	258,913	199,438	190,293
사망	2,069	1,292	1,243	2,268	2,202	1,482
이중등록	308	225	237	258	3,663	369
국외이주	15,385	13,373	11,274	9,355	10,027	7,533
현지이주	11,163	11,172	18,290	20,152	25,536	24,805
국적이탈	891	1,138	1,664	3,318	8,611	1,371
기타	119	77	223	473	381	562
이의신청 말소	17	16	10	10	8	9
기타말소	102	61	213	463	373	553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2007.3).

제2절 외국인등록 변동요소

1. 체류외국인 관리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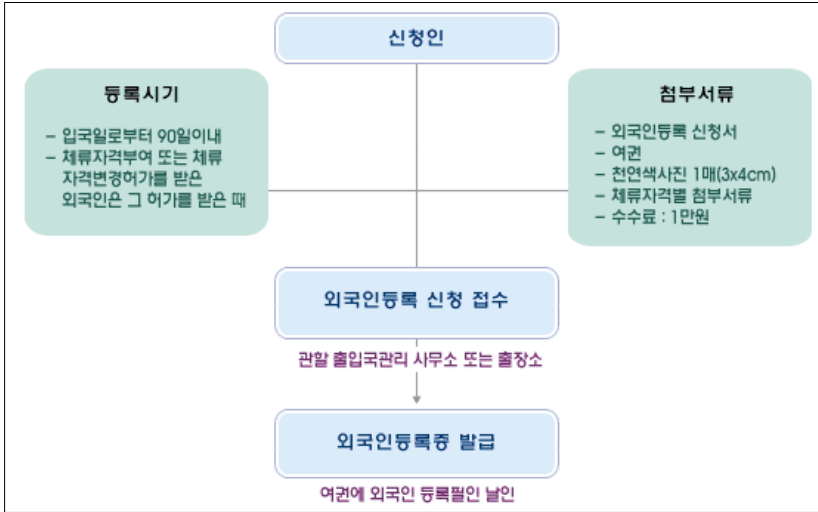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체류(체류기간 90일 이하), 장기체류(체류기간 91일 이상), 영주(체류기간 제한 없음)로 구분된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은 15가지가 있다¹⁴⁾. 장기체류와 영주의 경우 즉, 입국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대상)를 해야 한다.¹⁵⁾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4)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취재(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내향선원(E-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관광취업(H-1).

15) 다만, 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및 그 가족(A-1, A-2, A-3), 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국가 국민 중 다음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 (G-1) 의 경우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이 면제됨.

[그림 5-1] 외국인 등록절차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출국은 자유이며 이를 제한할 수는 없으나 범법 행위 등 체류 중의 귀책성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추방)조치를 할 수 있다. 체류기간을 넘겨 출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출국이 가능하며, 등록외국인이 체류 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록외국인은 완전 출국, 외국국적 포기 후 한국국적 취득, 사망, 체류자격 변경¹⁶⁾ 등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완전출국자나 한국국적 취득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

16) 외국인이 현재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중지하고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VISA)을 받고 입국하여야 하지만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 수 있는 경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있다.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기 이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교(A-1), 공무(A-2), 협정(A-3) 체류자격자 등이 신분변경으로 그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외국인등록증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출입국 관리정보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를 연결하는 정보화망을 구성하고, 이를 서울·인천공항·김해·제주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을 서울·인천공항·김해·제주사무소장이 맡아 관리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심사를 마친 때에는 즉시 당해 출입국자의 출입국심사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저장하여야 하며, 이후 사무소장은 기록발생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에 “출입국자명부”를 작성하여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성된 출입국자명부는 출입국신고서에 적혀 있는 내용 및 입출항보고서 등과 비교하여 항상 정확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월별 출입국자명부 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각종 통계 생성작업을 실시하여 본부 및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외국인등록 변동요소

외국인등록 통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입국 시 기록된 자료와 외국인 등록시스템을 통해 작성되고 있는데, 비자의 종류와 체류허가기간을 기준으로 장기와 단기,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는 외국인등록 대상 90일 이상의 장기체류 외국인에 한정하여 진단하기로 한다.

우선 법무부에서 작성한 외국인통계를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외국인은 1,261,415명이며, 이중 장기체류외국인은 1,002,742명이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258,673명으로 나타났다. 장기체류외국인 수는 등록외국인수(918,917명)와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83,825명) 수를 합한 결과이다. 등록외국인 중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넘긴 경우 불법체류자는 78,545명으로 8.5%를 차지하며, 그 비율은 2006년 16.9%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장·단기 및 합법 여부에 따른 체류외국인 현황, 2006~2010

(단위 : 명, %)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장·단기 여부	장기 소계	660,607	800,262	895,464	920,887	1,002,742
	- 등록외국인	631,219	765,746	854,007	870,636	918,917
	- 외국국적동포(거소)	29,388	34,516	41,457	50,251	83,825
	단기	249,542	266,011	263,402	247,590	258,673
등록 외국인	합법체류	524,562	658,468	760,546	786,907	840,372
	불법체류(%)	106,657 (16.9%)	107,278 (14.0%)	93,461 (10.9%)	83,729 (9.6%)	78,545 (8.5%)
단기 체류	합법체류	145,707	151,716	156,916	153,977	169,435
	불법체류(%)	103,835 (41.6%)	114,295 (42.9%)	106,486 (40.4%)	93,613 (37.8%)	89,238 (34.5%)

주 : 장기 체류외국인 수 = 등록외국인 수 +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

자료 :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등록외국인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문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으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불법 장기체류자들이다. 이들은 다양한 경로를 거쳐 장기 불법체류자가 되고 있다. 단기체류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왔으나, 허가기한을 넘겨 등록하지 않고서 장기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원래 장기 체류의 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되었으나, 허가기한을 넘겨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 국제결혼의 목적으로 이주하였으나, 도중에 잠적한 경우가 있다. 밀입국을 통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적

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유형들의 장기 불법체류자들은 그 속성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이들 중에는 당초 체류자격이 유학생, 결혼이주자 및 이주 전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 난민, 노동자, 해외동포(거소신고자 등) 등을 들 수 있다.

실제 2010년 전체 단기체류자 258,673명 중 불법체류자는 89,238명으로 34.5%에 달하였다. 이들 단기체류 외국인(단기체류 비자 소지자)의 불법체류자 중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96%로 나타났다. 단기체류 외국인들 경우 체류자격별로 합법체류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기체류자중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다만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모두 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

〈표 5-4〉 단기체류 외국인 현황, 2006-2010

	(단위 :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249,542	266,011	263,402	247,590	258,673
합법체류	145,707	151,716	156,916	153,977	169,435
불법체류	103,835	114,295	106,486	93,613	89,238
(비율)	(41.6%)	(42.9%)	(40.4%)	(37.8%)	(34.5%)
불법체류기간					
1개월 이하	2,436	1,969	1,280	993	961
2개월 이하	3,522	2,733	1,905	1,361	1,430
3개월 이하	3,586	2,790	1,863	1,149	1,397
1년 이하	20,363	24,447	15,989	7,330	11,381
2년 이하	11,133	22,124	23,709	15,530	7,688
2년 초과	62,795	60,232	61,740	67,250	66,381

자료 : 법무부(2010).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결국 이들은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누락되거나 거주 불명 등을 외국 인등록 통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 다만,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의 규모는 밀입국 등 극히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국자와 출국자간의 개별 매칭을 통해 행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을

뿐이다.

국내체류 외국인을 출입국 심사 자료나 외국등록시스템만으로 완전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및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외국인 주민 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등록정보,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며, 필요시 외국인주민 가구방문 등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90일 이상 장기체류 외국인 중 한국국적을 미취득한 자, 혼인귀화 및 기타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주민 자녀(결혼이민자와 국적취득자로 이루어진 가족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이 어렵고, 설사 조사를 실시한다고 할지라도 장기 불법체류 외국인들 모두를 파악하는데 한계성이 존재한다.

조사를 통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최근에 실시한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진단해볼 수 있다.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빠짐없이 전수로 조사하고 있으며 실질적 조사대상 외국인은 3개월 이상 체류하는 또는 체류 예정인 사람으로 조사 기준시점 당시에 외국국적자를 의미한다. 외국인은 외국인전용 조사 표에 따라 성별, 연령은 물론 학력, 교육정도, 직업, 산업 등 다양한 변수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 제외되는 인구는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 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이 해당된다.

2010년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589,532명으로 법무부의 출입국기록에 의한 2010년 말 기준 장기체류 외국인 1,002,742명의 58%수준으로 누락정도가 큼을 알 수 있다. 2010년도

등록외국인 중 불법체류자가 8.5%인 것을 고려하면 불법체류자의 조사 기피 뿐만 아니라 합법체류 외국인의 조사누락도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제3절 등록인구 변동요소 관리의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 원칙적으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혼인, 이혼 등 여러 가지 신분행위를 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제적 처리된다. 이러한 각 개인의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과 가족간의 친족관계 등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공증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는 개인의 신분관계는 취학, 군복무, 취업, 각종 법률행위, 연금 등 평생 동안 개인의 권리 및 의무의 발생과 해소와 관련하여 사실을 공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는 진실한 신분관계와 부합되도록 각종 신고 제도를 두고 있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형벌로써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우리나라의 출생신고는 지연신고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는 경우가 많아 인구학적인 관심 변수인 실제 연령과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인구통계에서 연령은 생일이 지난 횟수를 의미하며 완전하게 1년이 지난 만 나이를 의미한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은 대개 출생을 하면서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등록을 함으로써 정해진다. 1960년대 이전에는 그간의 호적신고 행태나 높은 영아사망률, 전쟁, 사회불안 등 경제사회 혼란 등으로 신고 누락이나 지연신고가 많았다. 그러다가 주민의 거주관계 및 인구의 동태를 등록하게 하는 주민등

록법이 1962년 5월 10일 제정되면서 신분등록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라는 두 개의 법령으로 신분관계가 일제히 정비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연령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되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주민등록 연령은 반드시 적게 등재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연령층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자체가 부정확하여 오히려 연령이 높게 등재된 경우도 많다. 이는 2010년 인구센서스의 100세 이상 자료와 비교해도 쉽게 알 수 있다.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현재 100세 이상 고령자는 1,836명이었는데, 같은 시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는 100세 이상이 11,113명으로 6배나 더 많게 나타났다¹⁷⁾. 일부 고연령층은 신고 자체가 잘못 되어 있거나, 간혹 사망한 형제나 자매 심지어는 전처 등의 호적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연령층보다 주민등록인구와 조사인구의 차이가 크다¹⁸⁾.

최근에는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등록제도도 선진화되면서 국민들이 출생과 동시에 등록을 하여 실제 연령과 등록에 의한 연령의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 기존의 호적법(2008년 1월 1일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대체)에서 1991년 1월 1일부터는 출생신고 시 병원에서 의사가 발급하는 출생증명서를 첨부하게 함에 따라 출생년

17) 2005년 인구센서스에서는 100세 이상의 고령자가 961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는데, 비슷한 시점(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상으로는 100세 이상이 1,931명으로 2배가 많았다.

18) 물론 2010년이 과거에 비해 차이가 커진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10월 인권보호를 이유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였고, 법에 따라 2010년 10월 4일에 46만 6천명의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를 거주불명 등록자로 일괄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2010년 9월 현재 2,793명이던 100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2010년 10월에는 11,113명으로 한 달 사이에 8,320명이나 증가해 버렸다.

월일이 많이 정확해 졌다.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법의 신고사항과 동일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신고를 갈음하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이에 따라 출생 및 사망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신고만 하면 주민등록이 동시에 변경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신고 제도로 인해 주민등록 연령이 잘못 등재될 가능성도 있다. 아기의 이름을 짓지 못했거나 부모가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고의로 지연신고하기도 한다. 기존의 호적법에서는, 특히 2000년 이전에는 혼인 외의 출생아의 경우 부(父)가 없어 출생신고를 못하기도 했다. 또한 말띠, 용띠, 범띠 등의 해는 출생신고를 기피하거나 12월 출생아를 고의로 해를 넘겨 신고¹⁹⁾ 하기도 하기 때문에 출생을 발생년도 및 월별로 분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상주(de jure) 개념을 적용하는 인구센서스에서는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장소가 주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에 따라 해외에 3개월 이상 출국하는 사람은 장기 이동자로 간주되어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유학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여도 해외이주법에 의해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주민등록이 없어지지 않는다. 총인구면에서 볼 때 이러한 주민등록의 특성은 인구를 과다 추정케 하는 요인이 된다.

주소에 대한 주민등록과 인구센서스의 기준 차이는 지역별 인구의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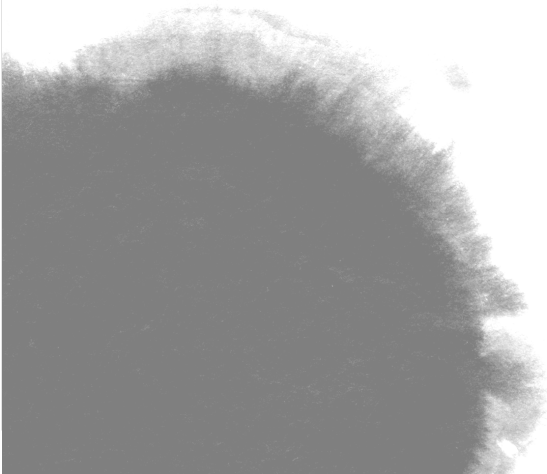
19) 12월 마지막 주의 출생은 다른 주에 비해 현저하게 적고 1월 첫째 주는 다른 주 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인다. 지연신고나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 시기를 조정한 까닭으로 보이며, 그 규모는 주당 평균 출생아수로 볼 때 2,500~3,5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정규모가 적어도 개념만으로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여기에 주택청약, 취업 및 취학, 부동산, 가족수당 등 개인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지 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주 개념의 인구센서스와 차이를 보인다. 더구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시 승격이나 행정조직 유지 또는 확장, 국가로 부서의 보조금 증액 등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이 주민등록 유치운동을 공공연하게 벌이기도 해 주민등록인구와 인구센서스간의 지역별 차이가 더욱 커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말소자의 일괄 등록의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거주지 이전 등으로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가족의 신고나 주민신고 및 사실조사로 주민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말소자는 빗 때문에 장기간 도피하거나, 범죄자, 각종 세금 장기미납자 등으로 알려져 있다. IMF 위기 이후에는 신용불량자가 크게 늘어 주민등록말소자도 많이 증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는 무단전출(거주불명자) 말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 제한 및 각종 사회안전망 제외로 인권침해 야기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무단전출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 관리하는 법 개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2010년 10월 4일자로 총 46만 6천 명의 말소자가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에 편입되었다. 이 정도 규모의 인구라면 충분히 주민등록 인구의 전체 규모와 성 및 연령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와 조정이 필요하다.

06

주민등록 활용 인구관리 방안



제6장 주민등록 활용 인구관리 방안

제1 절 분석방법

향후 주민등록인구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으로 평가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출생 및 사망의
지연신고를 감안할 때, 주민등록인구를 이용해 목표연도(예를 들어,
2010년 인구)의 인구를 바로 추정하는 것보다는 주민등록자료를 이용해
과거 특정시점의 상주인구를 소급 추정한 후 여기에 그 시점 이후의 인
구변동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가감하여 추정인구를 완성하는 방식으
로 분석하기로 한다.

주민등록인구의 평가와 보정은 커버리지(coverage)와 내용(content)
의 두 영역으로 나뉜다. 커버리지는 조사대상 범위를 의미한다. 여기에
서 조사대상 범위는 상주개념의 인구로 신고개념의 주민등록인구를 이
용하여 전환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만 실
제 외국에 거주하는 인구를 제외하도록 한다. 인구동태사건의 신고 지
연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지 않은 출생이나 제외되지 않은
사망을 보정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보정하도
록 한다.

우선 커버리지(coverage)에 대해 보정하도록 한다. 특정년도의 주민
등록인구는 인구동태신고시스템과 인구동태집계방법의 특성으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한다.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과 사망은 발생 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에 출생과 사망은 신고시점에서 반영된다. 따라서 발생시점 기준의 상주인구 개념에서 작성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2월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이 해를 넘겨 익년 1월에 신고하면 정상 신고지만 연말기준으로 작성되는 주민등록인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주인구의 관점에서는 12월에 발생한 출생과 사망은 다른 해에 신고되더라도 12월 인구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처럼 제도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상주인구와 주민등록인구 간에 차이가 발생한다.

통계작성시스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도 있다. 현재 특정년도의 출생과 사망은 익년 4월까지 신고된 자료를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만약 주민등록인구를 연말기준으로 작성한다면 i) 전년도 12월 이전 출생과 사망 중 지연신고와 전년도 12월 출생과 사망 중 1월에 신고된 법정기한 내 신고가 함께 있는 1월 중 신고된 출생과 사망, ii) 지연신고되었으나 공식통계에는 포함되는 2~4월에 신고된 전년도 출생 및 사망, iii) 5월 이후에 신고되어 공식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전년도 출생과 사망 모두 제외된다. 여기에서는 법정기한 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연도를 달리해 신고되는 모든 출생 및 사망 모두 지연신고로 간주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내용(content)에 대한 평가와 보정은 주민등록인구의 연령과 거주지에 초점을 둔다. 1993년과 2008년에 통계청에서 실시한 두 차례의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들을 이용하여 연령 및 지역 보정계수를 추정·적용하기로 한다. 제1차 주민등록확인조사는 연말상주인구조사를 폐지하고 당시 전산화를 마친 주민등록인구자료를 활용하기에 앞서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2차 주민등록확인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가구에 살고 있는 8.8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양 조사에서는 생년월일과 거주지에 대

해 실제와 주민등록기록과 일치 여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준인구(2005년 12월 31일 24시)에 그 이후 연도에서 발생한 출생, 사망, 이동을 가감하여 2010년까지 연도별 인구를 추정하였다.

제2절 주민등록인구 평가 및 보정방법

1. 커버리지

상주인구를 작성하는 기준시점은 각종 자료의 수집가능성과 인구센서스 실시년도(2005년)를 감안하여 2006년 1월 1일로 설정하였다. 이처럼 기준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이유는 기준시점 이후에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감안한 추정인구를 2010년 인구센서스 결과와 비교·검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월 1일 현재 기준인구는 성 및 연령별로 추정하되, 주민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추정하여 제외하고, 출생 및 사망 지연신고를 가감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를 추가하여 식(1)과 같이 작성한다.

$$P_{(x, 2006.1.1)} = RP_{(x, 2006.1.1)} - O_{(x, 2006.1.1)} + UB_{(x, 2006.1.1)} - UD_{(x, 2006.1.1)} + DR_{(x, 2006.1.1)} \quad \cdots(1)$$

여기에서 $P_{(x, 2006.1.1)}$ 은 2006년 1월 1일 현재 x세 인구, $RP_{(x, 2006.1.1)}$ 은 x세 주민등록인구, $O_{(x, 2006.1.1)}$ 은 등록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x세 인구, $UB_{(x, 2006.1.1)}$ 은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x세 인구, $UD_{(x, 2006.1.1)}$ 은 사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x세 사망자, $DR_{(x, 2006.1.1)}$ 은 x세 주민등록말소자

첫 번째 단계인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 해외거주인구의 추정은 총규모와 성 및 연령별 분포로 나누어 진행한다. 총규모 추정에는 1971~1999년까지는 출입국자료와 이민자료, 2000년 이후는 국제이동자료를 이용하되, 내·외국인별로 출입국 구분이 안 되는 1962~1970년은 1971~1975년 출입국자료의 내국인 구성비를 활용한다. 출입국 개별자료에 대한 매칭방법을 통해 출국 후 10년(주민등록을 한국에 두고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가정)까지 귀국하지 않은 내국인의 성 및 연령별 분포를 추정한다. 장기 출국자는 통계청의 국제인구이동 개별자료(3개월 이상 입국 및 출국자)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인구이동 자료는 2000년부터 작성되었기 때문에 국제이동자료가 없는 기간(1997~1999)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출입국 총수자료를 이용하여 장기 출국자를 추정한다. 이들의 성 및 연령별 분포는 매칭자료의 분포를 적용하되, 추정 후의 연령은 1997년생의 경우 1세, 1998년생의 경우 2세, 1999년생의 경우 3세씩을 각각 상향 이동한다.

매칭은 한국인 국제이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 이름, 출생년월일을 통합해 매칭 키로 사용한다. 여권번호는 분실하여 재발급 받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사례가 있어 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일단 개인별로 매칭이 되면, 이를 국제이동일자별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여 맨 위에 오는 레코드를 최종 국제이동 상태로 판정하며, 최종 상태가 출국인 경우만 추출하여 집계한다.

다음 단계에서는 지연 신고된 출생 수를 추정한다. 이를 위해 연령별 생존비(survival ratio)²⁰⁾를 계산해 본 결과(표 6-1), 7세 미만 아동은 2000~2009년 간 모든 연령층에서 1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7세 미만 연령층에서 상당수의 출생아가 체계적으로 지연되어 신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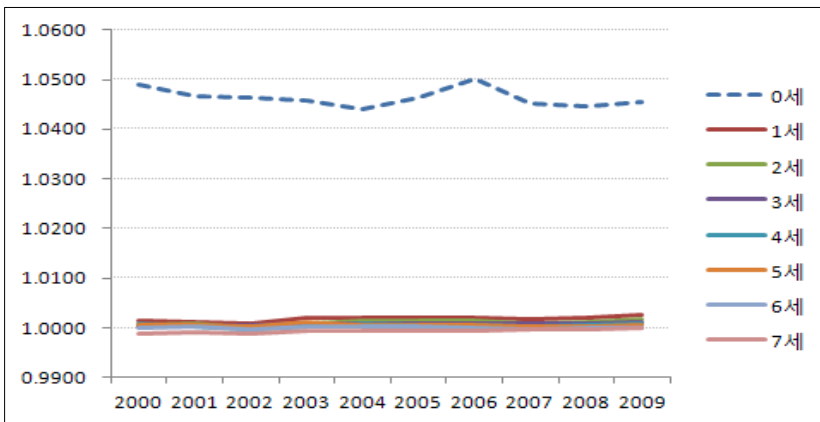
20) 특정 집단 가운데 어느 일정기간까지 생존하는 사람의 비율로 (1-사망률)과 같다.

〈표 6-1〉 주민등록인구의 생존비(0-7세), 2000~2009

연령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	1.0491	1.0467	1.0464	1.0458	1.0440	1.0465	1.0503	1.0452	1.0447	1.0455
1	1.0014	1.0010	1.0009	1.0021	1.0020	1.0019	1.0019	1.0018	1.0020	1.0025
2	1.0004	1.0007	0.9999	1.0008	1.0014	1.0014	1.0014	1.0009	1.0012	1.0016
3	1.0002	1.0003	1.0005	1.0009	1.0009	1.0009	1.0008	1.0007	1.0009	1.0012
4	1.0009	1.0001	0.9996	1.0002	1.0007	1.0006	1.0005	1.0001	1.0004	1.0007
5	1.0005	1.0006	1.0001	1.0012	1.0006	1.0005	1.0004	1.0003	1.0003	1.0005
6	0.9999	1.0001	0.9997	1.0002	1.0001	1.0002	1.0000	0.9998	0.9999	0.9999
7	0.9988	0.9991	0.9989	0.9993	0.9993	0.9993	0.9995	0.9997	0.9997	0.9999

* 해당연도(n)의 연령 t의 인구 대비 연도 n+1의 연령 t+1 인구 비율

〔그림 6-1〕 주민등록인구의 생존비(0-7세), 2000~2009



현재 출생과 사망 신고는 16개월 신고 분으로 연간 자료를 확정한다. 사실 16개월이면 인구동태사건의 대부분이 신고되기 때문에(8년 기준으로 하면 출생은 99.1%, 사망은 99.2%), 시의성 있는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이 수준에서 출생 및 사망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총인구를 추정하는 입장에서는 16개월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신고는 거의 100% 신고를 포함하는 기간인 8년을 감안하며,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자료부터 보완을 하기로 한다.

2006년 1월 1일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지연 신고된 출생을 보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998년생의 경우 8년 후인 2006년 출생신고 분까지 누적하여 2006년 1월 1일 기준의 7세 인구에 보완한다. 1999년생부터는 8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전 출생년도에서 당해 연도 신고 분 대비 추정년도 신고 분 비율을 추정년도(1999년생)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8년 신고분이 없는 부분만큼 추정을 한다. 예를 들어 <표 6-2>에서 t-6을 1998년이라고 하자. D11은 1998년 출생아 중에서 1998년 신고 분(D00) 대비 2006년 신고 분(D01)의 비율을 1999년 출생아 중 1999년 신고 분(D10)에 곱하여 8년 후 신고 분(D11)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D22는 D12/D10의 비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작성된 출생 지연신고 분(ΣD)은 2005년 말 기준으로 7세(1998년생)부터 0세(2005년생)까지 각각 그 수만큼 보정한다.

<표 6-2> 출생 지연신고 추정(년 말 현재)

연도	출생년도							
t	t-6(Dij)	t-5(Dij)	t-4(Dij)	t-3(Dij)	t-2(Dij)	t-2(Dij)	t-1(Dij)	t(Dij)
t+0	D00	D10	D20	D30	D40	D50	D60	D70
t+1	D08	D18	D28	D38	D48	D58	D68	D78
t+2	D07	D17	D27	D37	D47	D57	D67	D77
t+3	D06	D16	D26	D36	D46	D56	D66	D76
t+4	D05	D15	D25	D35	D45	D55	D65	D75
t+5	D04	D14	D24	D34	D44	D54	D64	D74
t+6	D03	D13	D23	D33	D43	D53	D63	D73
t+7	D02	D12	D22	D32	D42	D52	D62	D72
t+8	D01	D11	D21	D31	D41	D51	D61	D71
ΣD	D01	D11~12	D21~23	D31~34	D41~45	D51~56	D61~67	D71~78

다음 단계는 성 및 연령별로 2006년 1월 1일 주민등록인구에 신고되지 않은 사망자를 추정하여 보완하는 것이다. 출생과 달리 사망자의 지연신고는 전 연령층에서 발생한다. 출생과 같이 8년이면 신고가 마무리된다고 가정하면, 2006년 1월 1일 현재 7세 이상 각 연령별 인구에는 과거 8년 동안의 사망 미신고자가 누적되어 포함된다. 예를 들어,

2005년 말 현재 각 연령에는 8년 전 사망자는 8년 후에 신고하는 비율만큼, 7년 전 사망자는 7~8년 후에 신고하는 비율만큼, 6년 전 사망자는 6~8년 후에 신고하는 사망자 비율만큼 포함되어 있다. 즉, 과거에 사망했는데 아직 신고가 되지 않아 2005년 말 현재의 주민등록인구에 살아 있는 것으로 잘못 등재된 인구가 있다는 것이다. <표 6-3>에서 각 셀의 사망 지연신고자수는 먼저 연도별로 신고율(전체 사망자 중 n년 후에 신고하는 비율)을 각 연령별 사망자에 곱하여 연차별 사망 신고자수를 추정하되, 연도별로 지연신고가 마무리되지 못한 연수만큼(t-8년은 8년 후 신고분만, t-7년은 7, 8년 후 신고 분, ..., t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지연 신고 분(1~8년후 신고 분))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2005년 말 현재 연령으로 추정해야 하기 때문에 <표 6-3>과 같이 연령을 조정(예, t-8년의 0세는 8세로 이동)한 후, 각 연령별로 더하면 연령별 사망 지연신고를 추정할 수 있다.

<표 6-3> 사망 지연신고 추정(2005년 말 현재)

	t-8	t-7	t-6	t-5	...	t-2	t-1	t	계
0세							$r(1)*d(t-1,0)$	$r(0)*d(t,0)$	$\Sigma 0$ 세
1세							$r(1)*d(t-1,0)$	$r(0)*d(t,1)$	$\Sigma 1$ 세
2세						$r(2)*d(t-2,0)$	$r(1)*d(t-1,1)$	$r(0)*d(t,2)$	$\Sigma 2$ 세
3세					...	$r(2)*d(t-2,1)$	$r(1)*d(t-1,2)$	$r(0)*d(t,3)$	$\Sigma 3$ 세
4세					...	$r(2)*d(t-2,2)$	$r(1)*d(t-1,3)$	$r(0)*d(t,4)$	$\Sigma 4$ 세
5세				$r(5)*d(t-5,0)$	...	$r(2)*d(t-2,3)$	$r(1)*d(t-1,4)$	$r(0)*d(t,5)$	$\Sigma 5$ 세
6세			$r(6)*d(t-6,0)$	$r(5)*d(t-5,1)$	...	$r(2)*d(t-2,4)$	$r(1)*d(t-1,5)$	$r(0)*d(t,6)$	$\Sigma 6$ 세
7세		$r(7)*d(t-7,0)$	$r(6)*d(t-6,1)$	$r(5)*d(t-5,2)$	...	$r(2)*d(t-2,5)$	$r(1)*d(t-1,6)$	$r(0)*d(t,7)$	$\Sigma 7$ 세
8세	$r(8)*d(t-8,0)$	$r(7)*d(t-7,1)$	$r(6)*d(t-6,2)$	$r(5)*d(t-5,3)$	...	$r(2)*d(t-2,6)$	$r(1)*d(t-1,7)$	$r(0)*d(t,8)$	$\Sigma 8$ 세
x세	$r(8)*d(t-8,x-8)$	$r(7)*d(t-7,x-7)$	$r(6)*d(t-6,x-6)$	$r(5)*d(t-5,x-5)$	...	$r(2)*d(t-2,x-2)$	$r(1)*d(t-1,x-1)$	$r(0)*d(t,x)$	Σx 세

주 : $r(8)$ =8년 후 신고비율, $r(7)$ =(7+8)년후 신고비율, $r(6)$ =(6+7+8)년후 신고비율, ..., $r(0)$ =모든 지연 신고비율; $d(t, x)$ 는 t년도 x세의 사망자수.

마지막 단계인 주민등록말소자를 보정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10월 4일자로 일괄 등록한 주민등록말소자는 46만 6천 명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교도소, 정신병원 등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는데, 주민의 신고로 잘못 말소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46만 6천 명을 모두 실제 대한민국에 상주하면서 주민등록에는 등록되지 않는 인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 10월 31일 현재 주민등록인구 중 말소자는 26만 8,845명이라고 밝히고 있다(행정자치부, 2007). 이는 과거 5년 이내로 계속하여 말소 상태인 사람만 포함하고, 5년 이상 말소 상태가 지속된 사람은 제외시킨 수치이다.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해외거주자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추정치(26만 8,845명)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²¹⁾ 그런데 여전히 주민등록말소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에 대한 정보는 구할 수가 없어, 2010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말소자를 5년 과거로 소급 연령이동한 후 그 구성비를 이용하기로 한다.

2. 연령 및 거주지

주민등록인구의 연령 및 거주지의 정확성은 통계청에서 1993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평가·보정하도록 한다. 2008년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의 일치율은 80.4%이며, 남자(82.1%)가 여자(78.8%)보다 3.3%p 높게 나타났다. 출생연도별로 일치율을 살펴보면, 1950년대 이전 출생자는 60% 수준, 1970년대 출생자는 85.4%, 1980년대 출생자는 95.2%, 1990년 이후 출생자는 97.9% 등으로 최근에 출생한 인구일

21) 이내성(2006)은 2000~2005년 주민등록 순수 말소자를 147,28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수록 실제 연령과 주민등록 연령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 연령 차이가 ± 1 세 이내인 비율은 94.4%, ± 2 세 이내 비율은 97.8%, ± 3 세 이내 비율은 99%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주민등록 연령이 상향(5.4%)보다는 하향(14.2%) 신고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실제 출생연도별 주민등록 신고년도의 분포는 <부표 1>에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의 형태로 수록하였다.

한편, 2008년에 실시된 주민등록확인조사에서 거주지를 확인한 결과, 주소 기준으로 일치하는 비율은 90.7%였다. 이를 읍면동 기준으로 일치율은 92.2%, 시군구 기준으로 일치율은 94.9%, 시도기준으로 일치율은 97.3%로 높아졌다. 이러한 수준은 1993년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로 나타난 거주지 일치율(읍면동 기준 82.2%, 시군구 기준 91.7%, 시도 기준 95.3%)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표 6-4〉 출생연도별 실제연령과 주민등록연령 간 일치율(1996~2005년생)

(단위: %)

	출생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6-2005
전체	3.1	4.8	5.8	6.8	7.8	7.6	9.0	11.0	15.1	28.9	100.0
15<	0.3	0.6	0.8	1.0	1.3	1.4	1.7	2.1	3.1	5.3	17.5
15-19	0.3	0.4	0.5	0.6	0.8	0.8	0.9	1.1	1.3	2.0	8.7
20-24	0.3	0.4	0.4	0.4	0.5	0.5	0.6	0.8	1.4	5.5	10.9
25-29	0.2	0.3	0.3	0.4	0.6	0.7	1.0	1.4	2.2	4.7	11.7
30-34	0.3	0.5	0.7	0.9	1.0	1.0	1.2	1.4	1.8	2.8	11.5
35-39	0.5	0.7	0.8	0.9	1.0	0.9	1.1	1.3	1.7	2.6	11.5
40-44	0.3	0.5	0.6	0.7	0.8	0.8	0.8	1.0	1.3	1.9	8.8
45-49	0.3	0.5	0.6	0.7	0.8	0.7	0.7	0.8	0.9	1.4	7.5
50-54	0.3	0.3	0.4	0.4	0.4	0.3	0.3	0.4	0.5	0.8	4.4
55-59	0.1	0.2	0.2	0.2	0.2	0.2	0.2	0.3	0.3	0.5	2.3
60-64	0.1	0.2	0.2	0.2	0.2	0.2	0.2	0.2	0.2	0.4	1.7
65-69	0.1	0.1	0.1	0.2	0.2	0.1	0.1	0.1	0.2	0.3	1.4
70-74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9
≥ 75	0.1	0.1	0.2	0.2	0.2	0.1	0.1	0.1	0.1	0.2	1.3

주 : 1)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 결과.

2) 주민등록 출생연도의 응답거부와 연령차가 7세를 초과하는 자료는 제외.

〈표 6-5〉 출생연도별 실제연령과 주민등록연령 간 일치율(전체 출생연도)

(단위: %)

	전체	출생년도								
		~'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07
계	80.4	68.5	65.8	60.2	66.8	66.2	72.1	85.4	95.2	97.9
남	82.1	71.1	71.1	62.6	68.3	67.1	73.8	87.6	95.5	97.8
여	78.8	67.9	63.2	58.4	65.5	65.3	70.5	83.3	95.0	98.0

주 : 1)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 결과.

2) 주민등록 출생년도의 응답거부와 연령차가 7세를 초과하는 자료는 제외.

〈표 6-6〉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의 차이 분포(전체 출생연도)

(단위: 명, %)

		연령차이(주민등록연령-실제연령)												
		-6	-5	-4	-3	-2	-1	0	1	2	3	4	5	6
계	83,733	107	167	343	852	2,392	8,070	67,318	3,690	404	180	101	75	34
남	40,182	40	60	109	342	1,028	3,714	33,001	1,602	147	70	31	25	13
여	43,551	67	107	234	510	1,364	4,356	34,317	2,088	257	110	70	50	21
계	100.0	0.1	0.2	0.4	1.0	2.9	9.6	80.4	4.4	0.5	0.2	0.1	0.1	0.0
남	100.0	0.1	0.1	0.3	0.9	2.6	9.2	82.1	4.0	0.4	0.2	0.1	0.1	0.0
여	100.0	0.2	0.2	0.5	1.2	3.1	10.0	78.8	4.8	0.6	0.3	0.2	0.1	0.0

주 : 1)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 결과.

2) 주민등록 연령 미상과 연령차의 절대값이 7세를 초과하는 자료는 제외.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 및 지역보정계수를 만들어 주민등록인구의 연령 및 주소지를 보정한다.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는 <표 6-7>에 나타나듯이 먼저 실제 출생연도별로 주민등록연령과의 차이를 -6세부터 6세의 범위로 표시한다. 이 표에서 C₀는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이 같음을 나타낸다. 오른쪽 칼럼에는 주민등록연령이 실제연령보다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어 C₁은 1살, C₂는 2살이 더 많은 비율이다. 왼쪽 칼럼은 주민등록연령이 실제연령보다 낮은 비율이다. 물론 연도로 표시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많아진다. 각 연령별로 C₋₆부터 C₆까지 각 연도별로 표에 주어진 값만큼 인구를 계산하여 더하면 그 연령의 인구가 된다. 이 공식에 의하면 계수(C)는 출생연도별로 각각 -6부터 6까지 전부 13개 층의 값을 갖는다.

〈표 6-7〉 실제 연령별 주민등록연령 분포

출생 년도	'05년 기준	주민등록연령-실제연령(Ci)												
		-6	-5	-4	-3	-2	-1	0	1	2	3	4	5	6
t		t+6	t+5	t+4	t+3	t+2	t+1	t	t-1	t-2	t-3	t-4	t-5	t-6
<예>														
'92	13세	'98	'97	'96	'95	'94	'93	'92	'91	'90	'89	'88	'87	'86

주 : 실제 t년생 인구 = {[주민(t-6)년생×C₆]+[주민(t-5)년생×C₅]+[주민(t-4)년생×C₄]+[주민(t-3)년생×C₃]+[주민(t-2)년생×C₂]+[주민(t-1)년생×C₁]+[주민t년생×C₀]+[주민(t+1)년생×C₋₁]+[주민(t+2)년생×C₋₂]+[주민(t+3)년생×C₋₃]+[주민(t+4)년생×C₋₄]+[주민(t+5)년생×C₋₅]+[주민(t+6)년생×C₋₆]} / 100

이에 따라 연령보정계수(C_i^t)를 이용하여 실제 연령 인구(P_t)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P_t = \sum_{i=-6}^6 C_i^t P_{t-i}^r \text{ -----}(2)$$

여기서 t 는 연도, i 는 (주민등록연령-실제연령), P_t 는 실제 t 년생 인구, P_{t-i}^r 는 주민등록 $t-i$ 년생 인구, C_i^t 는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로 주민등록 $t-i$ 연도의 인구 중 실제 t 년에 속하는 인구의 비율

동일한 방식으로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로 작성된 지역보정계수(C^k)를 이용하면, 실제 거주지 인구(P_k)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P_k = \sum_k C^k P_k^r \text{ -----}(3)$$

여기서 k 는 시도, P_k 는 k 시도에 살고 있는 인구, P_k^r 는 k 시도의 주민등록인구, C^k 는 주민등록 지역보정계수로 k 시도의 주민등록인구에 대한 실제 거주 인구의 비율

식(2)와 (3)을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합하면 지역연령보정계수를 만들 수 있다.

$$P_{t,k} = \sum_k \sum_{i=-6}^6 C_{t,k}^i P_{t-i,k}^r \text{ -----}(4)$$

제3절 주민등록인구의 보정 사례

1. 커버리지 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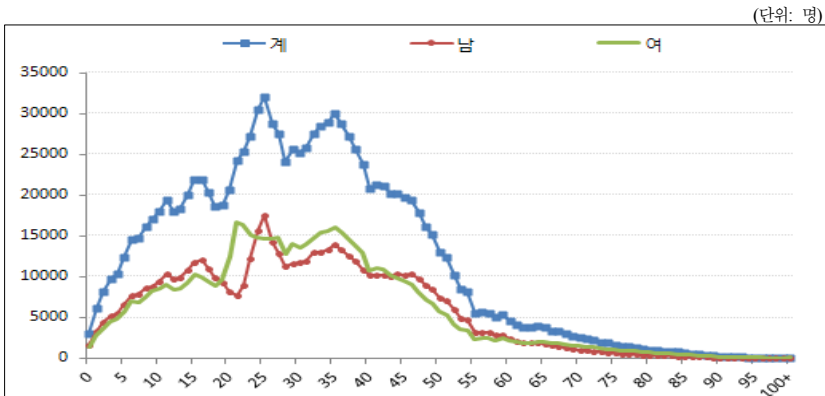
2006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은 있으나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117만 8천 명으로 추정되었다.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이 17.5%로 가장 많았고, 25~29세 11.7%, 30~34세와 35~39세는 각각 11.5%를 차지했다. 이들을 출국연도별로 보면, 2005년 출국자(출국하여 3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 28.9%, 2004년 출국자 15.1%, 2003년 출국자 11.0% 등으로 2003~2005년간 출국자가 전체의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6-8〉 주민등록 중 해외 장기 거주자의 규모(2005년 말 현재)

(단위: 천명)

	출국 (a)	입국 (b)	이민 (c)	해외장기체류 (d=a-b-c)
1962~1970				49
1971~1979	1,443	963	278	202
1980~1989	7,030	6,555	359	116
1990~1999	33,891	33,395	165	332
2000~2005				479
계				1,178

〔그림 6-2〕 주민등록 중 해외장기거주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2005년 말)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에 반영되지 않는 7세 이하의 출생 지연신고 중 2005년에 출생했지만 익년 4월까지 신고한 출생아는 1만 8천명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지연신고 분은 혼인 외의 출생아로 보인다.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자녀의 성을 모의 성으로도 비교적 용이하게 등록할 수 있어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이전의 호적제도에서는 혼인 외의 출생아를 호적에 올리는 것이 쉽지 않아 이들 아동은 상당기간 호적은 물론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자녀들이 학령인구로 성장하면서 뒤늦게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7세 이하의 연령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인 중의 출생아로서 지연 신고된 자들 중 일부분은 실제로는 혼인 외의 출생아였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혼인하여 혼인 중의 출생아로 신고된 경우도 포함되어 있어, 혼인 외의 출생아를 이유로 하는 지연신고는 실제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아야 한다.

〈표 6-9〉 주민등록 중 해외 장기 거주자의 연령별 분포(2005년 말 현재)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96~ 2005
계	3.1	4.8	5.8	6.8	7.8	7.6	9.0	11.0	15.1	28.9	100.0
15<	0.3	0.6	0.8	1.0	1.3	1.4	1.7	2.1	3.1	5.3	17.5
15-19	0.3	0.4	0.5	0.6	0.8	0.8	0.9	1.1	1.3	2.0	8.7
20-24	0.3	0.4	0.4	0.4	0.5	0.5	0.6	0.8	1.4	5.5	10.9
25-29	0.2	0.3	0.3	0.4	0.6	0.7	1.0	1.4	2.2	4.7	11.7
30-34	0.3	0.5	0.7	0.9	1.0	1.0	1.2	1.4	1.8	2.8	11.5
35-39	0.5	0.7	0.8	0.9	1.0	0.9	1.1	1.3	1.7	2.6	11.5
40-44	0.3	0.5	0.6	0.7	0.8	0.8	0.8	1.0	1.3	1.9	8.8
45-49	0.3	0.5	0.6	0.7	0.8	0.7	0.7	0.8	0.9	1.4	7.5
50-54	0.3	0.3	0.4	0.4	0.4	0.3	0.3	0.4	0.5	0.8	4.4
55-59	0.1	0.2	0.2	0.2	0.2	0.2	0.2	0.3	0.3	0.5	2.3
60-64	0.1	0.2	0.2	0.2	0.2	0.2	0.2	0.2	0.2	0.4	1.7
65-69	0.1	0.1	0.1	0.2	0.2	0.1	0.1	0.1	0.2	0.3	1.4
70-74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9
≥75	0.1	0.1	0.2	0.2	0.2	0.1	0.1	0.1	0.1	0.2	1.3

주 : 각 연도별 수치는 1996~2005년 전체 누적분(117만 8천 명)에 대한 구성비임.

7세 이하의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또 다른 이유로는 해외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출생 당시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만 했다가 귀국하면서 주민등록신고를 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 인구변동요인에 해외출생 부분은 국제이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완이 필요치 않게 된다.

<표 6-10> 7세 이하 주민인구의 출생 지연신고 추정(2005년 말 현재)

(단위: 명)

신고 연도	출생연도(2005년 현재의 나이)							
	1998(7)	1999(6)	2000(5)	2001(4)	2002(3)	2003(2)	2004(1)	2005(0)
보정	72	213	762	1,165	1,518	2,142	2,940	4,310
t	632,536	614,200	634,473	554,854	492,045	490,488	472,705	434,994
t+1	4,943	2,594	2,169	1,977	2,012	1,925	1,855*	1,510
t+2	1,363	1,192	1,004	920	889	1,259	804	834
t+3	831	785	729	672	850	567	618	568
t+4	616	636	572	677	430	491	473	436
t+5	477	528	584	385	397	396	382	352
t+6	563	675	438	496	439	438	422	388
t+7	356	143	252	221	196	195	188	173
t+8	72	70	72	63	56	55	53	49

주 : * 자료 미상으로 2003년 출생아의 2004년 신고비율(0.39%)로 추정.

여기에서는 출생 자료를 이용해 <표 6-2>의 방법을 적용해 2005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의 0-7세 인구를 보완하였다. 기본적인 원리는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출생 후 8년이 지나면 출생신고가 종결된다는 가정(실제 자료에서도 거의 100%가 신고)에서 공식 출생통계인 16개월 신고분의 8년 신고분에 대한 비율을 이용해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자료를 보완하였다. 1998년 출생은 8년 후인 2006년 신고 분까지 누적하였다. 1999년부터는 전부 8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전 출생년도에서 당해연도 신고 분 대비 추정년도 신고 분 비율을 추정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8년 신고분이 안 되는 부분만큼을 추정했다. 이 방법에 따라 2005년 말 기준으로 7세(1998년생)는 72명, 6세(1999

년생)는 213명, 5세(2000년생)는 762명, 0세(2005년생)는 4,310명으로 각각 추정하였다(표 6-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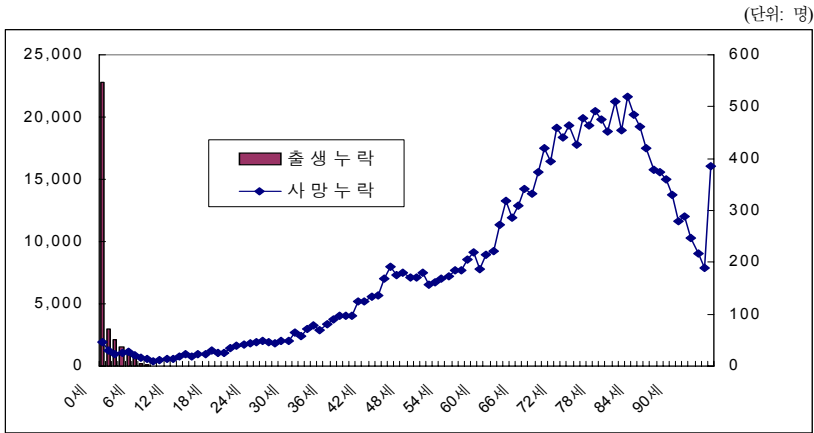
한편,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된 사망 미신고분은 모두 1만 9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2005년에 사망하였으나 2006년 1~4월에 신고했기 때문에 주민등록인구에서 제외되지 못한 사망자는 9천명으로 추정되었고, 16개월 이후 지연신고 되어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되어 있는 사망자도 9천명으로 추정되었다. 사망 지연신고자 전체(1만 9천명)를 성별로 보면, 여자 사망자(1만 1천명)가 남자 사망자(8천명) 보다 30% 더 많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의 지연신고가 두드러진 가운데 남자는 70대, 여자는 80대 사망자에서 높은 지연신고를 보였다.

〈표 6-11〉 2005년 말 현재 주민등록인구에 포함된 사망 미신고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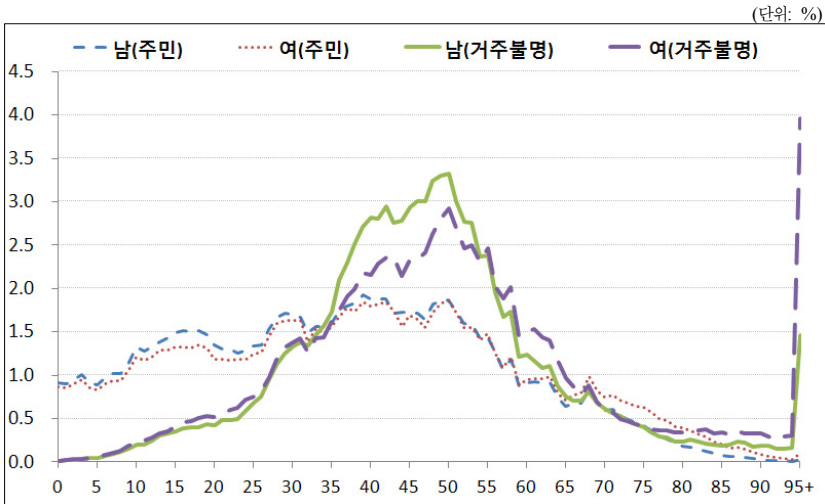
	계	남자	여자
계	18,618	8,086	10,532
0-4	151	85	66
5-9	74	38	36
10-14	90	36	54
15-19	127	48	79
20-24	204	72	132
25-29	235	82	153
30-34	341	128	213
35-39	459	205	254
40-44	689	375	314
45-49	888	495	393
50-54	841	448	393
55-59	981	515	466
60-64	1,315	697	618
65-69	1,778	968	810
70-74	2,187	1,048	1,139
75-79	2,359	1,025	1,334
80-84	2,430	928	1,502
85+	3,469	893	2,576

[그림 6-3] 주민인구의 출생 및 사망누락 추정(2005년 말 현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0년 10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거주불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일괄 등록한 주민등록말소자는 46만 6천명이다. 하지만 이 규모는 과다하게 집계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제인구이동으로 출국으로 잡힌 인구 중 일부가 주민등록 상 말소자로 분류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단적인 예로 2010년 인구센서스에서 조사된 100세 이상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및 말소인구를 비교해 보자. 센서스 100세 이상 인구는 95세 센서스인구에 대해 행정자료 및 심층면접으로 재조사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자료로 볼 수 있다. 2010년 인구센서스의 최종 결과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는 1,836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같은 시점 주민등록 100세 이상 인구는 11,113명으로 6.1배가 더 많았다. 그런데 2010년 10월 현재 주민등록 100세 이상 인구 11,113명은 주민등록 말소자 일시 등록으로 전월(2,793명) 보다 8,320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민등록 말소자 자료의 정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물론 고연령층이라 다른 연령층 보다 더 부정확할 개연성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연령층에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실제 상주하지 않는 허수의 인구가 적지 않게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림 6-4] 주민등록인구 및 주민등록 말소자의 성 및 연령별 분포



따라서 여기에서 주민등록말소자는 2007년 11월 19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과거 5년 기준 주민등록말소자인 26만 8,845명의 규모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말소자의 연령구조는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등록한 말소자의 분포를 사용하되, 85세 이상 고령자는 말소자가 지나치게 높아 주민등록 전체 인구의 구성비를 그대로 사용했다.

2. 연령 및 거주지 보정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로 작성된 연령보정계수를 2005년 주민등록인구에 적용하면,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7%에 해당하는 83만 명의 연령이 조정되었다.

남자가 39만 명이 조정되는 반면, 여자는 44만 명이 조정되었다. 연령별로는 35~39세(-171천명), 30~34세(-89천명), 60~64세(-64천명), 40~44세(-48천명) 등은 인구가 줄어들고, 55~59세(104천명), 70~74세(87천명), 50~54세(79천명), 45~49세(51천명), 75~79세(32천명), 80~84세(25천명) 등은 인구가 늘어났다.

〈표 6-12〉 주민등록 연령보정계수¹⁾ 적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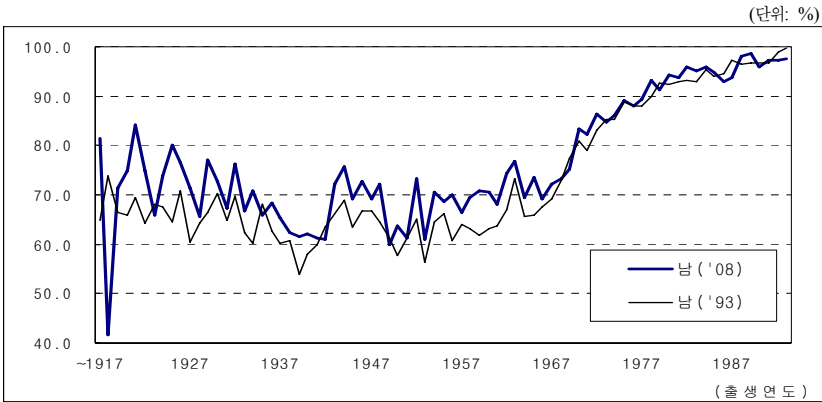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주민인구(A) ²⁾			보정인구(B)			차이(A-B)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8,782	24,456	24,326	48,782	24,456	24,326			
0-4	2,430	1,264	1,166	2,430	1,264	1,166	0	0	0
5-9	3,262	1,706	1,556	3,262	1,706	1,556	0	0	0
10-14	3,566	1,895	1,671	3,558	1,889	1,669	8	6	2
15-19	3,131	1,648	1,483	3,127	1,648	1,479	4	0	4
20-24	3,709	1,913	1,796	3,713	1,917	1,796	-4	-4	0
25-29	3,917	2,003	1,914	3,897	2,006	1,891	20	-3	23
30-34	4,375	2,230	2,145	4,286	2,175	2,111	89	55	34
35-39	4,447	2,265	2,182	4,276	2,191	2,085	171	74	97
40-44	4,294	2,196	2,099	4,246	2,174	2,072	48	22	27
45-49	4,079	2,069	2,010	4,130	2,078	2,051	-51	-9	-42
50-54	2,956	1,483	1,474	3,035	1,516	1,520	-79	-33	-46
55-59	2,306	1,145	1,161	2,410	1,202	1,208	-104	-57	-47
60-64	1,985	941	1,044	1,921	904	1,017	64	37	27
65-69	1,694	760	934	1,706	778	928	-12	-18	6
70-74	1,206	484	722	1,293	533	760	-87	-49	-38
75-79	749	257	492	781	268	512	-32	-11	-21
80-84	426	134	292	451	143	308	-25	-9	-16
85-89	180	49	131	186	49	137	-7	0	-6
90+	70	14	56	74	14	60	-4	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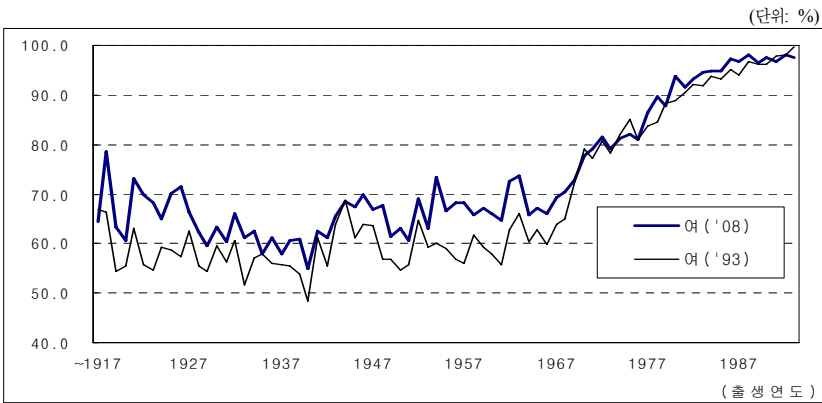
주 : 1)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로 작성된 계수, 2) 2005년 인구.

그런데 2008년 주민등록확인조사의 연령별 일치율을 15년 전인 1993년 주민등록확인조사의 일치율과 비교한 결과 양 자료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8년 주민등록확인조사가 고연령층에서 일부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는데다가,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지만 인구구조 상 요철(凹凸)이 더 심해지는 연령이 일부 있어 연령보정계수는 2008년 자료보다는 1993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양 주민등록확인조사의 조사방법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1993년 주민등록확인조사는 면접조사 후 주민등록 대대표와 일일이 대조한 반면, 2008년 주민등록확인조사는 가구 응답에만 거의 의존했다. 아울러 일부 고연령층은 표본수도 상대적으로 적어 불규칙적인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 일치율(남성), 1993, 2008



[그림 6-6] 주민등록연령과 실제연령 간 일치율(여성), 1993, 2008



2008년에 실시된 주민등록확인조사의 거주지 확인 결과를 보면 주소 기준으로 일치하는 비율은 90.7%였다. 이를 읍면동 기준으로 집계하면 일치율이 92.2%, 시군구 기준으로 집계하면 일치율이 94.9%, 시도 기준으로 집계하면 일치율이 97.3%였다. 이러한 수준은 1993년 주민등록 확인조사 결과 집계된 거주지 일치율(읍면동 기준 82.2%, 시군구 기준 91.7%, 시도 기준 95.3%)과 비교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한편, 2008년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로 지역보정계수

도 만들었는데,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은 1보다 적고 나머지 시도는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1보다 적다는 것은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불일치자 중에 해당 시도에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반대의 경우 보다 많다는 의미이다. 이 지역들은 지역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시도별 지역보정계수는 <부표2> 참조).

2005년 주민등록인구에 지역보정계수를 적용한 결과, 경기(-107천명), 전남(-30천명), 부산(-22천명), 서울(-17천명) 등은 인구가 감소하여 실제 거주인구보다 주민등록인구가 더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광주(45천명), 충북(21천명), 대구 및 강원(각 19천명), 대전(17천명), 경남(15천명), 인천(12천명), 경북(8천명), 울산(7천명), 충남(6천명), 제주(4천명), 전북(3천명) 등은 지역보정계수 적용 후 인구가 더 많아졌다. 전체적으로 시도 기준으로 35만 명의 거주지가 보정되었다.

〈표 6-13〉 주민등록 지역보정계수¹⁾ 적용결과

(단위 : 천명)

	주민등록인구(A) ²⁾			보정계수		보정인구(B)			차이(B-A)		
	계	남	여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서울	10,167	5,062	5,105	0.996	0.995	10,150	5,057	5,093	-17	-5	-12
부산	3,638	1,813	1,826	0.989	0.993	3,616	1,798	1,818	-22	-15	-7
대구	2,511	1,259	1,252	1.006	1.003	2,530	1,271	1,259	19	12	7
인천	2,600	1,311	1,290	1.003	1.001	2,613	1,318	1,294	12	8	5
광주	1,402	696	706	1.032	1.027	1,447	720	727	45	24	21
대전	1,455	730	725	1.012	1.005	1,471	741	730	17	11	6
울산	1,088	559	529	1.008	1.000	1,095	565	530	7	6	1
경기	10,697	5,396	5,302	0.987	0.988	10,590	5,340	5,250	-107	-55	-51
강원	1,513	761	752	1.011	1.009	1,532	771	761	19	11	9
충북	1,489	750	739	1.014	1.008	1,509	762	747	21	12	8
충남	1,963	988	974	1.001	1.000	1,969	992	976	6	4	2
전북	1,885	939	947	0.996	1.002	1,889	938	951	3	-1	5
전남	1,967	980	987	0.975	0.989	1,938	959	979	-30	-21	-8
경북	2,688	1,349	1,339	0.996	1.004	2,696	1,348	1,348	8	-1	9
경남	3,160	1,586	1,575	1.002	1.002	3,175	1,594	1,581	15	8	6
제주	558	278	279	1.007	1.000	561	281	280	4	3	1

주 : 1)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로 작성된 계수.

2) 2005년 인구.

3. 인구 보정 결과

지금까지 제시한 방법으로 주민등록인구를 상주개념의 인구로 보정(전환)한 인구를 살펴보자. 2005년 연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48,782천명인 반면, 상주개념보정인구는 47,873천명으로 909천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민등록인구에서 자연신고 혹은 누락된 출생이수와 사망자수를 가감하고, 해외장기체류자를 제외하고, 주민등록말소자를 추가한 결과가 기 발표된 주민등록인구보다 적음을 의미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해외에서 취업, 유학 등으로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도 국내의 주민등록표에 그대로 남아 있는 인구(1,178천명)의 규모가 주민등록 말소자(269천명)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한편, 출생과 사망의 자연신고 혹은 신고 누락에 기인한 차이는 그 규모가 작은데다가 상쇄효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그리 크지 않다.

〈표 6-14〉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 보정인구간 차이(연말기준)

(단위 :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 인 구	주민등록인구(A)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상주개념보정(B)	47,873	47,997	48,175	48,357	48,576	48,775
	차이(A-B)	909	995	1,094	1,183	1,197	1,741
남 성	주민등록인구(C)	24,456	24,557	24,691	24,823	24,930	25,310
	상주개념보정(D)	24,011	24,073	24,159	24,245	24,350	24,446
	차이(C-D)	445	484	532	578	580	864
여 성	주민등록인구(E)	24,326	24,435	24,578	24,717	24,843	25,205
	상주개념보정(F)	23,862	23,925	24,016	24,112	24,225	24,330
	차이(E-F)	464	510	562	605	618	8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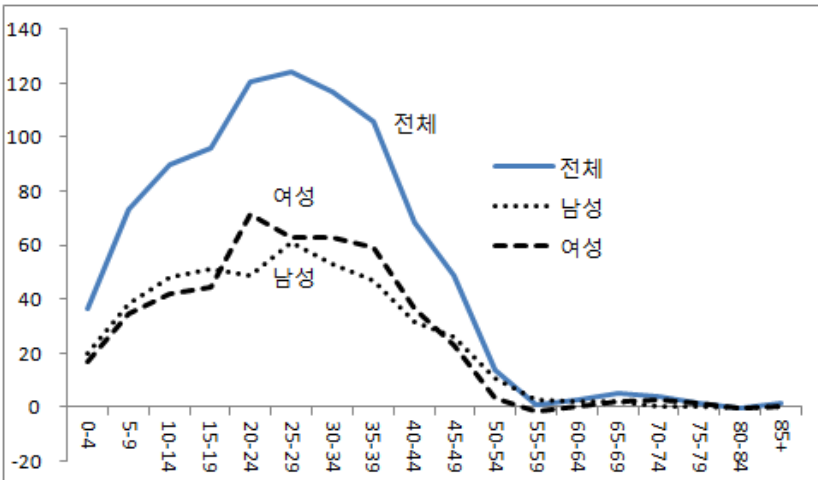
2006~2010년 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보정인구 간의 차이도 2005년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주민등록인구가 상주개념보정인구보다 더 많으며, 그 차이는 최근에 올수록 더 커지는 양상을 보

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 909천명에서 2010년에는 1,741천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국제이동이 활발해지면서 해외에서의 장기체류자가 그대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성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2005년 연말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보정인구 간의 차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 55~59세를 제외하면 예외 없이 주민등록인구가 상주개념보정인구보다 더 많다. 저연령층에서는 출생신고 지연보다는 국제이동(장기체류)의 영향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인구가 상주개념보정인구보다 많다. 20대와 30대에서 두 인구 간의 차이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국제이동(장기체류자)의 영향에 기인한다. 두 인구 간의 차이는 고연령층일수록 줄어드는데, 이는 국제이동의 영향이 고연령층일수록 급격하게 줄어들음을 의미한다. 노인층에서도 다소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사망 신고의 지연에 기인한 것이다.

[그림 6-7] 주민등록인구와 상주개념 보정인구간의 차이, 2005년 사례

(단위 : 천명)



〈표 6-15〉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전체

(단위: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등록인구	48,782	48,992	49,269	49,540	49,773	50,516
0-4	2,430	2,317	2,316	2,290	2,263	2,300
5-9	3,262	3,134	2,955	2,807	2,660	2,458
10-14	3,566	3,548	3,494	3,422	3,326	3,262
15-19	3,131	3,207	3,316	3,403	3,486	3,564
20-24	3,709	3,494	3,287	3,164	3,134	3,136
25-29	3,917	3,993	4,035	4,062	3,894	3,731
30-34	4,375	4,191	4,075	3,905	3,873	3,951
35-39	4,447	4,566	4,596	4,566	4,499	4,420
40-44	4,294	4,181	4,156	4,289	4,375	4,500
45-49	4,079	4,281	4,378	4,383	4,355	4,344
50-54	2,956	3,212	3,386	3,625	3,853	4,110
55-59	2,306	2,348	2,457	2,515	2,656	2,957
60-64	1,985	1,961	1,956	2,041	2,133	2,276
65-69	1,694	1,763	1,898	1,924	1,914	1,915
70-74	1,206	1,293	1,363	1,441	1,518	1,569
75-79	749	791	843	892	959	1,049
80-84	426	441	463	490	534	581
85+	249	268	295	323	342	392
상주개념보정	47,873	47,997	48,175	48,357	48,576	48,775
0-4	2,393	2,281	2,281	2,255	2,231	2,290
5-9	3,189	3,057	2,876	2,728	2,586	2,361
10-14	3,476	3,447	3,387	3,314	3,224	3,156
15-19	3,035	3,100	3,199	3,279	3,366	3,437
20-24	3,589	3,365	3,150	3,021	2,993	2,974
25-29	3,793	3,853	3,877	3,896	3,731	3,551
30-34	4,258	4,072	3,951	3,773	3,738	3,775
35-39	4,341	4,448	4,465	4,424	4,359	4,232
40-44	4,226	4,108	4,070	4,186	4,261	4,307
45-49	4,030	4,227	4,313	4,308	4,275	4,190
50-54	2,942	3,194	3,356	3,584	3,801	3,979
55-59	2,305	2,347	2,453	2,506	2,639	2,883
60-64	1,983	1,959	1,952	2,034	2,124	2,237
65-69	1,689	1,758	1,896	1,923	1,914	1,895
70-74	1,202	1,289	1,358	1,436	1,518	1,556
75-79	747	789	839	887	950	1,029
80-84	426	439	459	484	529	570
85+	248	265	290	318	336	355

〈표 6-16〉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남성

(단위: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등록인구	24,456	24,557	24,691	24,823	24,930	25,310
0-4	1,264	1,204	1,199	1,183	1,168	1,186
5-9	1,706	1,636	1,544	1,465	1,386	1,278
10-14	1,895	1,885	1,849	1,803	1,745	1,706
15-19	1,648	1,690	1,755	1,805	1,855	1,893
20-24	1,913	1,808	1,705	1,649	1,637	1,647
25-29	2,003	2,042	2,070	2,079	1,999	1,918
30-34	2,230	2,137	2,069	1,994	1,972	2,017
35-39	2,265	2,314	2,343	2,327	2,297	2,256
40-44	2,196	2,153	2,125	2,183	2,222	2,294
45-49	2,069	2,169	2,221	2,227	2,217	2,220
50-54	1,482	1,612	1,704	1,830	1,940	2,075
55-59	1,145	1,166	1,222	1,249	1,322	1,468
60-64	941	937	940	990	1,041	1,113
65-69	760	796	865	879	879	886
70-74	484	529	566	606	646	676
75-79	257	273	296	319	351	395
80-84	134	138	144	152	165	180
85+	63	68	75	83	89	103
상주개념보정	24,011	24,073	24,159	24,245	24,350	24,446
0-4	1,244	1,184	1,181	1,166	1,152	1,182
5-9	1,668	1,594	1,503	1,423	1,347	1,228
10-14	1,847	1,831	1,792	1,746	1,691	1,650
15-19	1,597	1,632	1,691	1,739	1,791	1,826
20-24	1,864	1,757	1,651	1,593	1,581	1,580
25-29	1,942	1,972	1,990	1,995	1,919	1,832
30-34	2,177	2,082	2,012	1,934	1,912	1,936
35-39	2,218	2,262	2,285	2,263	2,234	2,164
40-44	2,164	2,122	2,088	2,138	2,172	2,199
45-49	2,043	2,141	2,189	2,190	2,179	2,138
50-54	1,472	1,600	1,686	1,805	1,912	2,003
55-59	1,142	1,162	1,218	1,242	1,311	1,428
60-64	939	934	936	984	1,034	1,091
65-69	758	794	864	880	880	877
70-74	484	528	564	604	647	670
75-79	257	272	294	316	344	383
80-84	134	137	143	150	163	174
85+	63	67	73	79	83	85

〈표 6-17〉 2005~2010년 주민등록인구 및 상주개념 보정인구, 여성

(단위: 천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주민등록인구	24,326	24,435	24,578	24,717	24,843	25,205
0-4	1,166	1,113	1,117	1,107	1,096	1,114
5-9	1,556	1,499	1,411	1,342	1,274	1,180
10-14	1,671	1,663	1,645	1,619	1,582	1,556
15-19	1,483	1,517	1,561	1,598	1,631	1,672
20-24	1,796	1,686	1,582	1,515	1,497	1,489
25-29	1,914	1,951	1,965	1,982	1,895	1,813
30-34	2,145	2,055	2,006	1,911	1,900	1,934
35-39	2,182	2,253	2,254	2,239	2,202	2,164
40-44	2,099	2,028	2,032	2,105	2,153	2,206
45-49	2,010	2,113	2,157	2,156	2,137	2,125
50-54	1,473	1,600	1,682	1,795	1,913	2,035
55-59	1,161	1,183	1,235	1,266	1,333	1,488
60-64	1,044	1,024	1,016	1,051	1,092	1,163
65-69	934	966	1,034	1,044	1,035	1,029
70-74	722	764	797	834	872	894
75-79	492	518	547	573	609	654
80-84	292	303	319	338	369	401
85+	186	199	219	240	254	289
상주개념보정	23,862	23,925	24,016	24,112	24,225	24,330
0-4	1,149	1,096	1,100	1,090	1,079	1,108
5-9	1,521	1,462	1,374	1,305	1,239	1,134
10-14	1,629	1,616	1,595	1,568	1,533	1,506
15-19	1,438	1,468	1,508	1,541	1,575	1,611
20-24	1,725	1,608	1,499	1,428	1,412	1,394
25-29	1,851	1,881	1,887	1,901	1,813	1,719
30-34	2,082	1,990	1,939	1,839	1,826	1,838
35-39	2,123	2,186	2,180	2,161	2,125	2,068
40-44	2,062	1,986	1,982	2,048	2,089	2,108
45-49	1,987	2,086	2,124	2,118	2,095	2,051
50-54	1,470	1,593	1,670	1,778	1,890	1,976
55-59	1,163	1,185	1,236	1,264	1,328	1,456
60-64	1,044	1,024	1,016	1,050	1,090	1,146
65-69	932	964	1,032	1,043	1,034	1,018
70-74	719	762	794	832	871	886
75-79	490	517	546	571	606	647
80-84	292	302	317	335	367	396
85+	186	198	218	239	252	270

제4절 주민등록을 활용한 인구관리 방안

이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한 인구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우선 필요성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에 관한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원으로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추계인구 및 주민등록인구가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시의성(timeliness)이 낮으데다가 조사 누락 및 중복의 문제로 인하여 정밀도가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추계인구는 인구주택총조사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전망치로서 우리나라의 공식 인구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물론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를 보정하여 이전 5년간의 인구를 추정(backward estimation)하여 공식 인구로 확정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작업은 5년이 지나서야 실시함으로써 시의성이 아주 낮은 문제가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매월 및 매월 작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아주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관련 등록제도 및 신고제도 자체와 지연 혹은 왜곡 신고(등록)로 인하여 정확도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민등록인구는 그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어 시의성 있는 우리나라의 공식 인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기존의 주민등록인구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특정 시점(연말)에서의 우리나라 인구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연말 기준으로 포함되어야 할 인구가 누락되었거나, 반대로 제외되어야 할 인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법적으로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라고 해도 특정 시점의 정확한 우리나라 인구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주민등록인구를 우리나라의 공식인구로 상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연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 즉, 상주 개념의 인구로 전환하여야 한다. 즉, 출생신고, 사망신고, 국제이동신고,

주민등록말소 등이 일정한 시점(연말 기준)으로 일치하도록 지연신고, 신고 누락 혹은 중복, 왜곡신고 등을 보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셋째, 현행 주민등록인구는 법적 기한 외에 지연 신고하거나 또는 불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비록 일부 인구가 특정 시점(연말) 기준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을지라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인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민등록인구는 현행대로 공표하여 활용토록하며, 추후 일정기간을 거쳐 보정된 상주개념의 인구를 우리나라 공식인구로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인구센서스는 주민등록인구를 기반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주민등록인구를 보정한 상주개념의 인구를 우리나라 공식인구로 확정하여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주민등록인구는 잠정치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추후 이를 보정한 상주개념의 인구는 확정치의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주민등록인구와 보정인구간의 차이를 줄이고, 또한 보정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 출생과 사망은 법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외국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내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정 기간은 인터넷 등이 발달되기 이전 모든 것을 페이퍼 등에 의거하여 신고할 시기에 규정된 것이다. 최근 통신의 발달 등을 감안하며 주민등록인구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신고제도의 신고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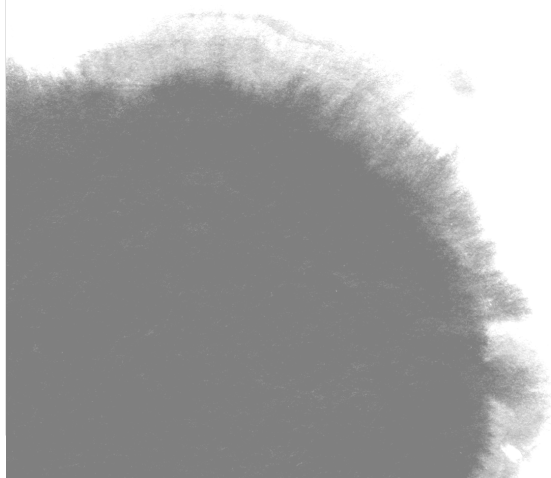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다섯째, 주민등록인구를 상주개념의 인구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연령에 관한 보정계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민등록인구를 상주 개념의 인구로 보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현재 주민등록인구와 관련하여 여러 부처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통계청 등이 공동으로 협의 및 심의를 위한 기구(회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 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식인구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작성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공식인구를 작성 및 확정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07

결론



제7장 결론

인구는 출생, 사망 및 국제이동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끊임없이 변동하는 유기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인구변동요소들 역시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변화한다.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 20세기 하반기부터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변되는 급격한 인구변동을 겪고 있다. 그러한 인구변동의 파급효과는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할 것이며, 그 결과로서 사회발전의 지속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 저하가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주체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시의성 있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변동을 명확하게 분석하는 일은 그 자체로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장 기초가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의 결과를 보정한 인구를 기준으로 추정된 장래인구에 의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매년 혹은 매월(상시적으로) 우리나라의 공식인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장래 변동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식인구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등록인구 작성 및 활용에 대한 외국의 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세 가지 자료원에 의하여 인구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센서스인구, 추계인구 및 주민등록인구가 해당된다. 센서스인구는 매 5년마다 실시되어 시의성이 낮고 대규모 조사로서 정도도 낮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인구추계는 인구센서스의 결과에 의거함으로써 매 5년마다 실시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하여 인구센서스 실시 이후 인구변동요소(출생, 사망, 국제이동)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특히, 매 5년마다 인구추계 시 직전 5년간의 공식인구를 추정(backward estimation)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매년 공식인구를 작성하지 못하고 지난 5년간 공백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주민등록인구 역시 출생신고, 사망신고, 국제이동신고 등의 법정 기한이 1~3개월 정도인데다가, 신고 지연 및 누락, 중복 신고, 왜곡 신고 등으로 인하여 이점 시점의 인구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인구는 매년(매월)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치유(보정)방법이 개발되고 관련 제도가 개선된다면 점에서 외국에서처럼 상시적인 공식인구를 작성 및 활용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제도, 인구동태신고, 출입국 신고, 외국인등록, 이주신고 등 다양한 관련 제도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있다. 환언하면, 주민등록인구는 이들 다양한 제도에 의거한 신고 및 등록에 의해 변동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제도들의 내재적 특성(법정 신고기간)과 외

재적 특성(운영상 오류 등)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인구를 공식인구로 간주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으로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및 이동(이주)신고의 법정 신고기간은 15일~3개월로 설사 그 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에도 특정시점(현재 연말기준으로 작성)의 인구에서 누락되거나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물론 법정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지연신고를 하거나 전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인구의 규모는 부정확 해진다. 신고 상의 문제점들은 인구 구조적인 측면에서 거주지와 연령을 왜곡시키는 작용을 한다.

본 연구는 현행 주민등록인구의 내재적 특성 및 외재적 특성들을 보정하여, 특정시점(연말기준)에 국내에 상주하는 인구를 작성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 및 이동(이주)신고 상 문제점들을 보정하여 상주개념의 인구규모를 작성한다. 구체적으로 합법적 및 불법적으로 특정시점(연말기준)을 지나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한 출생아수를 추정하여 해당연도의 연말 인구로 합산한다. 반대로 합법적 및 불법적으로 특정시점(연말기준)을 지나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를 누락한 사망자수를 추정하여 해당연도의 연말 인구에서 제외한다. 국내 말소인구를 추정하여 해당연도 인구로 포함시키며, 해외에서 장기체류하고 있으나 국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인구를 추정하여 제외시킨다. 한편, 주민등록확인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지역 및 연령 보정계수를 산정하고, 이를 적용하여 지역별 및 연령별로 인구를 보정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작업을 통해 2005년 주민등록인구를 상주개념의 인구로 전환(보정)한 결과, 두 인구 간의 차이는 약 1.8%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공식인구를 작성 및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민등록인구를 잠정치 개념으로 활용하고, 이후 보정을 거친 상주개념의 인구를 확정치 개념으로 우리나라의 공식인구를 활용하는 것

이다. 한편, 두 인구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를 통해 상주개념의 공식인구를 신속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 기술발달을 감안하여 각종 신고제도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 주민등록현장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정계수를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식인구를 상시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간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참고 문헌

- 법무부(2010). 2010년도 출입국·외국인 통계연보.
- 서우석·이명진(2008). “주민등록인구 통계의 작성현황 및 향후과제”, 조사연구 9권 3호: 23-53.
- 이내성(2006).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 행정자료 연계를 위한 기초 연구, 통계연구보고서, 통계개발원.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http://www.census.go.kr>
- 전미영·유상록·반지수·한기정·박찬황(2009). “전자정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모델”, 경영교육저널 제15권: 1~206
- 통계청(1994). 1993년 주민등록 평가조사 집계결과 보고서.
- 통계청(2005).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지침서.
- 통계청(2011). KOSIS.
- 행정자치부(2007). 내부자료
- 행정자치부(2007). 주민등록제도 발전방안 연구.
- 행정자치부(2007). 2007년 주민등록인구에 관한 보도자료 (2007.11.19.).
- 행정안전부(200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51호 (2008.5.28.).
- 행정안전부(201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계획.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지방행정국). <http://www.mopas.go.kr>
- Committee Report(2003). Sixteenth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Public Accounts on the Integrity of the Social Insurance Number, *House of Commons Committee, 2nd Session, 37th Parliament.*

Grauman, J. V.(1959). “*Population Estimates and Projections*”, in Philip M. Hauser and Otis Dudley Duncan(ed.), *The Study of Populatio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pp 544-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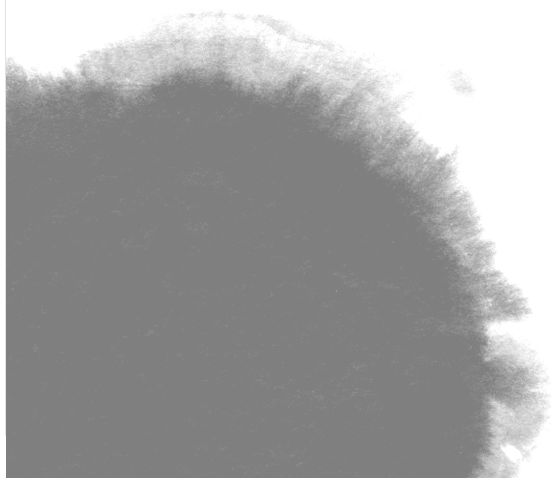
INSEE(2008). *Annual Report.*

INSEE(2011). *National Directory for the Identification of Natural Persons.* <http://www.insee.fr/en/methodes/default.asp?page=definitions/rnipp.htm>

Service Canada(2011). *Executive Summary.*

Skatteverket(2000). *Population Registration in Sweden.*

부 록



〈부표 1〉 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남자)

실제 생년	합계	C-6	C-5	C-4	C-3	C-2	C-1	C0	C1	C2	C3	C4	C5	C6
1993	100.0	0.00	0.00	0.00	0.00	0.00	0.00	99.80	0.20	0.00	0.00	0.00	0.00	0.00
1992	100.0	0.00	0.00	0.00	0.00	0.00	0.20	99.00	0.80	0.00	0.00	0.00	0.00	0.00
1991	98.4	0.00	0.00	0.00	0.00	0.00	0.60	96.80	0.90	0.10	0.00	0.00	0.00	0.00
1990	100.6	0.00	0.00	0.00	0.00	0.20	2.40	96.70	1.30	0.00	0.00	0.00	0.00	0.00
1989	100.8	0.00	0.00	0.00	0.00	0.00	2.20	96.80	1.70	0.10	0.00	0.00	0.00	0.00
1988	99.2	0.00	0.00	0.00	0.00	0.10	1.90	96.40	0.80	0.00	0.00	0.00	0.00	0.00
1987	100.4	0.00	0.00	0.00	0.00	0.00	1.80	97.30	1.30	0.00	0.00	0.00	0.00	0.00
1986	98.6	0.00	0.00	0.00	0.00	0.00	1.70	94.50	2.10	0.30	0.00	0.00	0.00	0.00
1985	100.0	0.00	0.00	0.00	0.20	0.10	4.10	93.90	1.60	0.10	0.00	0.00	0.00	0.00
1984	101.3	0.00	0.00	0.00	0.00	0.20	3.20	95.40	2.40	0.10	0.00	0.00	0.00	0.00
1983	99.2	0.00	0.00	0.00	0.00	0.80	2.50	92.80	2.80	0.30	0.00	0.00	0.00	0.00
1982	99.8	0.00	0.00	0.00	0.00	0.10	3.90	93.20	2.40	0.20	0.00	0.00	0.00	0.00
1981	101.3	0.00	0.00	0.00	0.20	0.70	3.90	93.00	3.40	0.10	0.00	0.00	0.00	0.00
1980	101.0	0.00	0.00	0.00	0.00	0.10	4.20	92.50	3.30	0.90	0.00	0.00	0.00	0.00
1979	100.4	0.00	0.00	0.00	0.00	0.20	3.70	92.70	3.30	0.30	0.20	0.00	0.00	0.00
1978	97.9	0.00	0.00	0.00	0.00	0.20	3.40	90.00	4.20	0.00	0.10	0.00	0.00	0.00
1977	100.5	0.00	0.00	0.00	0.00	0.30	5.90	88.00	6.00	0.10	0.00	0.00	0.20	0.00
1976	100.7	0.00	0.00	0.00	0.10	0.00	7.50	87.90	4.60	0.50	0.00	0.00	0.00	0.10
1975	101.5	0.00	0.00	0.00	0.00	0.00	5.80	88.80	6.40	0.40	0.10	0.00	0.00	0.00
1974	95.7	0.00	0.00	0.00	0.00	0.00	5.80	85.30	4.10	0.00	0.30	0.20	0.00	0.00
1973	97.1	0.00	0.00	0.00	0.00	0.10	6.40	85.30	5.30	0.00	0.00	0.00	0.00	0.00
1972	98.6	0.00	0.00	0.00	0.00	0.90	8.70	83.20	5.20	0.40	0.10	0.10	0.00	0.00
1971	96.0	0.00	0.00	0.30	0.40	0.80	10.10	79.10	4.70	0.40	0.00	0.20	0.00	0.00
1970	99.4	0.00	0.00	0.10	0.70	0.40	13.40	80.90	3.80	0.10	0.00	0.00	0.00	0.00
1969	98.0	0.00	0.00	0.00	0.10	1.70	11.10	77.30	7.50	0.10	0.20	0.00	0.00	0.00
1968	94.7	0.00	0.00	0.30	0.20	1.20	15.10	72.90	4.40	0.20	0.20	0.10	0.10	0.00
1967	93.3	0.00	0.20	0.00	0.50	2.20	15.50	69.20	5.20	0.50	0.00	0.00	0.00	0.00
1966	96.1	0.00	0.00	0.40	0.80	2.90	20.30	67.60	3.60	0.40	0.00	0.00	0.10	0.00
1965	96.9	0.00	0.30	0.20	0.50	4.40	20.30	65.90	5.10	0.10	0.10	0.00	0.00	0.00
1964	99.0	0.00	0.00	0.40	1.00	4.50	21.90	65.60	5.50	0.10	0.00	0.00	0.00	0.00
1963	108.8	0.00	0.00	0.40	1.50	5.50	23.10	73.30	4.40	0.30	0.10	0.00	0.20	0.00
1962	95.8	0.00	0.00	0.40	1.70	4.40	15.50	67.10	6.00	0.40	0.20	0.00	0.00	0.10
1961	96.7	0.00	0.00	0.50	0.90	4.00	20.70	63.60	6.20	0.60	0.20	0.00	0.00	0.00
1960	96.6	0.10	0.10	0.30	1.10	4.30	22.40	63.30	4.50	0.20	0.20	0.00	0.10	0.00
1959	97.2	0.20	0.00	0.20	2.10	5.20	20.40	61.70	6.30	0.50	0.60	0.00	0.00	0.00
1958	102.6	0.10	0.30	0.90	1.40	6.80	22.40	63.10	7.00	0.50	0.00	0.10	0.00	0.00
1957	103.4	0.00	0.10	0.60	1.30	8.20	21.10	64.00	7.00	0.40	0.20	0.20	0.30	0.00
1956	95.9	0.20	0.30	0.80	1.50	5.80	17.60	60.70	7.40	0.70	0.50	0.30	0.00	0.10
1955	104.6	0.00	0.40	0.60	1.50	8.10	20.00	66.20	6.80	0.40	0.10	0.00	0.50	0.00
1954	99.0	0.20	0.10	0.80	1.80	6.90	18.30	64.50	5.60	0.80	0.00	0.00	0.00	0.00
1953	87.9	0.20	0.30	0.50	1.90	5.50	14.40	56.30	7.60	0.40	0.50	0.00	0.20	0.10
1952	111.8	0.40	0.30	1.80	1.40	8.80	27.30	65.00	5.90	0.60	0.30	0.00	0.00	0.00
1951	91.5	0.00	0.20	0.50	2.10	6.10	14.30	61.30	5.90	0.80	0.00	0.00	0.00	0.30
1950	100.3	0.20	0.30	1.20	2.00	7.20	20.80	57.80	8.70	1.50	0.10	0.00	0.50	0.00

주 : 1993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 결과로 작성.

〈부표 1〉 계속(남자)

실제 생년	합계	C-6	C-5	C-4	C-3	C-2	C-1	C0	C1	C2	C3	C4	C5	C6
1949	104.0	0.00	1.10	1.00	2.90	8.10	20.90	61.30	5.90	0.50	0.00	0.10	1.10	1.10
1948	107.6	0.00	0.50	1.20	2.90	9.60	18.70	64.60	7.50	1.10	0.80	0.00	0.70	0.00
1947	103.1	0.10	0.30	0.50	2.40	6.00	16.60	66.70	9.00	0.50	0.40	0.00	0.30	0.30
1946	106.7	0.10	0.20	1.40	2.20	7.40	17.20	66.60	11.10	0.10	0.20	0.00	0.00	0.20
1945	95.2	0.00	0.20	1.20	3.10	4.70	14.90	63.50	6.00	1.50	0.00	0.10	0.00	0.00
1944	95.1	0.00	0.70	0.60	1.80	4.20	14.60	68.90	3.70	0.30	0.30	0.00	0.00	0.00
1943	95.9	0.20	0.10	1.30	2.40	5.00	15.70	66.30	4.50	0.20	0.00	0.10	0.10	0.00
1942	96.5	0.10	0.20	1.60	2.10	4.10	18.30	63.40	5.70	1.00	0.00	0.00	0.00	0.00
1941	93.8	0.00	0.00	0.40	1.50	4.30	22.50	60.00	4.50	0.30	0.30	0.00	0.00	0.00
1940	94.2	0.40	1.00	1.20	2.30	5.30	20.40	58.00	5.20	0.30	0.00	0.00	0.10	0.00
1939	94.7	0.10	1.10	1.30	1.80	7.70	22.00	54.00	6.30	0.40	0.00	0.00	0.00	0.00
1938	104.5	0.00	1.10	0.70	3.70	7.50	25.70	60.70	3.40	1.50	0.00	0.00	0.20	0.00
1937	100.5	0.10	0.90	0.80	4.50	8.10	17.30	60.30	5.50	0.90	1.20	0.00	0.90	0.00
1936	102.8	0.20	0.50	0.90	3.40	8.20	21.00	62.60	5.10	0.90	0.00	0.00	0.00	0.00
1935	111.3	0.10	1.20	1.30	2.80	8.00	18.80	68.10	7.30	0.70	0.00	1.30	1.40	0.30
1934	100.1	0.20	1.30	2.90	3.60	6.90	16.50	60.10	6.60	0.90	0.50	0.00	0.60	0.00
1933	97.6	0.60	0.70	2.10	3.20	4.80	16.10	62.50	5.50	1.20	0.00	0.20	0.70	0.00
1932	111.3	0.40	0.80	1.10	1.80	8.40	20.50	69.70	6.30	0.50	0.60	0.00	1.20	0.00
1931	105.6	0.50	0.20	1.50	4.10	6.30	16.60	64.80	6.90	2.10	1.10	1.00	0.00	0.50
1930	99.7	0.10	1.00	0.60	1.80	3.20	17.40	70.30	4.40	0.00	0.90	0.00	0.00	0.00
1929	101.2	0.20	0.70	1.10	1.90	6.70	13.30	66.50	8.50	1.50	0.00	0.00	0.00	0.80
1928	97.6	0.60	0.30	0.50	0.70	6.60	16.30	64.30	6.80	0.20	0.00	0.70	0.60	0.00
1927	96.3	0.00	0.40	0.40	0.40	5.60	18.70	60.40	5.00	1.10	0.00	1.90	0.20	2.20
1926	111.6	0.20	0.70	0.00	2.00	2.90	21.60	70.80	7.50	3.10	0.60	0.70	1.50	0.00
1925	103.5	0.00	0.10	1.40	2.00	4.10	18.40	64.60	2.90	5.70	0.00	1.20	1.90	1.20
1924	106.3	0.40	0.00	1.30	1.90	3.40	19.70	67.60	6.20	2.30	0.70	1.00	1.10	0.70
1923	115.9	0.00	0.00	0.60	1.80	3.30	19.80	68.20	9.10	1.20	3.80	2.80	4.50	0.80
1922	93.2	0.40	0.20	0.50	2.20	2.90	8.40	64.30	6.60	4.30	2.00	1.40	0.00	0.00
1921	118.1	0.00	0.00	0.00	1.90	6.50	17.00	69.50	10.60	5.10	0.00	0.80	3.40	3.30
1920	107.7	0.00	1.20	1.20	0.00	3.30	14.60	65.90	13.20	1.60	6.00	0.00	0.70	0.00
1919	91.1	0.00	0.00	0.60	1.80	1.60	9.50	66.40	2.70	0.80	1.90	1.70	2.10	2.00
1918	104.4	0.00	0.40	0.50	1.00	2.00	5.50	73.70	10.90	4.40	1.80	3.30	0.90	0.00
1917	100.3	0.00	0.60	0.00	1.20	2.70	9.60	64.80	12.40	3.50	1.10	0.00	0.00	4.40
1916	102.3	0.00	0.00	0.00	0.00	2.80	11.70	70.80	9.30	1.30	0.00	0.00	1.90	4.50
1915	100.3	0.00	0.00	0.00	1.20	3.20	3.70	69.20	5.50	6.70	4.70	0.00	0.00	6.10
1914	109.9	0.00	0.00	1.90	1.10	1.20	8.50	74.00	14.60	3.80	0.00	0.00	4.00	0.80
1913	108.0	0.00	0.00	0.00	2.30	2.00	10.00	67.70	7.30	3.80	5.50	7.60	1.50	0.35
1912	99.9	0.00	0.00	0.00	0.00	2.80	4.00	59.30	24.00	5.90	0.00	2.90	0.65	0.35
1911	90.8	0.00	0.00	0.00	0.00	0.90	15.70	48.80	16.90	2.80	3.40	1.26	0.65	0.35
1910	110.9	0.00	0.00	0.00	2.30	9.10	15.70	62.10	13.20	4.80	1.48	1.26	0.65	0.35
1909	72.8	0.00	0.00	0.90	0.00	1.40	5.10	52.80	6.80	2.08	1.48	1.26	0.65	0.35
1908	78.7	0.00	0.00	0.00	0.00	0.00	5.30	64.60	2.95	2.08	1.48	1.26	0.65	0.35

〈부표 2〉 주민등록연령보정계수(여자)

실제 생년	합계	C-6	C-5	C-4	C-3	C-2	C-1	C0	C1	C2	C3	C4	C5	C6
1993	99.8	0.00	0.00	0.00	0.00	0.00	0.00	99.60	0.20	0.00	0.00	0.00	0.00	0.00
1992	99.5	0.00	0.00	0.00	0.00	0.00	0.40	98.10	1.00	0.00	0.00	0.00	0.00	0.00
1991	100.3	0.00	0.00	0.00	0.00	0.00	1.70	97.70	0.90	0.00	0.00	0.00	0.00	0.00
1990	99.4	0.00	0.00	0.00	0.00	0.00	1.40	96.10	1.80	0.00	0.10	0.00	0.00	0.00
1989	100.7	0.00	0.00	0.00	0.00	0.00	2.90	96.30	1.40	0.10	0.00	0.00	0.00	0.00
1988	100.3	0.00	0.00	0.00	0.00	0.00	1.50	96.70	2.00	0.10	0.00	0.00	0.00	0.00
1987	96.8	0.00	0.00	0.00	0.00	0.10	1.60	94.00	1.10	0.00	0.00	0.00	0.00	0.00
1986	101.3	0.00	0.00	0.00	0.20	0.30	3.80	95.00	1.90	0.10	0.00	0.00	0.00	0.00
1985	99.1	0.00	0.00	0.00	0.00	0.10	3.80	93.30	1.80	0.10	0.00	0.00	0.00	0.00
1984	101.2	0.10	0.00	0.00	0.00	0.00	4.50	93.80	2.60	0.20	0.00	0.00	0.00	0.00
1983	98.8	0.00	0.00	0.00	0.00	0.30	3.50	91.80	3.10	0.10	0.00	0.00	0.00	0.00
1982	102.2	0.00	0.00	0.00	0.00	0.90	5.10	92.00	3.90	0.20	0.00	0.10	0.00	0.00
1981	99.3	0.00	0.00	0.00	0.00	0.20	4.50	90.60	3.90	0.10	0.00	0.00	0.00	0.00
1980	98.0	0.00	0.00	0.00	0.10	0.20	5.00	88.90	3.40	0.40	0.00	0.00	0.00	0.00
1979	100.0	0.00	0.00	0.00	0.00	0.30	6.70	88.20	4.50	0.30	0.00	0.00	0.00	0.00
1978	98.7	0.00	0.10	0.00	0.10	0.20	8.00	84.60	5.30	0.30	0.00	0.00	0.00	0.10
1977	98.9	0.00	0.00	0.00	0.00	0.20	9.40	83.80	5.10	0.40	0.00	0.00	0.00	0.00
1976	97.7	0.00	0.00	0.00	0.20	1.00	9.80	81.10	5.30	0.30	0.00	0.00	0.00	0.00
1975	104.1	0.00	0.00	0.00	0.00	0.70	12.60	85.20	5.00	0.40	0.20	0.00	0.00	0.00
1974	94.8	0.00	0.00	0.00	0.00	0.70	7.90	82.10	3.70	0.20	0.00	0.20	0.00	0.00
1973	94.9	0.00	0.00	0.00	0.10	0.70	10.60	78.20	4.70	0.50	0.00	0.10	0.00	0.00
1972	104.2	0.00	0.00	0.00	0.40	1.10	14.60	80.70	7.00	0.40	0.00	0.00	0.00	0.00
1971	96.3	0.00	0.00	0.00	0.20	2.20	11.40	77.30	4.90	0.30	0.00	0.00	0.00	0.00
1970	102.3	0.00	0.10	0.70	0.50	2.00	12.30	79.10	6.90	0.40	0.30	0.00	0.00	0.00
1969	94.9	0.00	0.00	0.30	0.10	1.60	11.70	72.30	7.80	0.80	0.10	0.00	0.10	0.10
1968	89.1	0.00	0.00	0.50	0.80	2.90	14.20	65.10	4.80	0.30	0.20	0.10	0.00	0.20
1967	95.5	0.00	0.00	0.40	0.50	4.90	18.50	63.90	6.40	0.60	0.10	0.20	0.00	0.00
1966	92.0	0.20	0.00	0.10	0.70	4.80	19.80	59.90	5.80	0.60	0.00	0.10	0.00	0.00
1965	100.5	0.00	0.10	0.60	1.90	5.90	21.30	62.90	6.00	0.80	0.40	0.30	0.30	0.00
1964	99.2	0.10	0.00	0.90	2.60	8.00	18.90	60.30	7.00	0.80	0.30	0.20	0.00	0.10
1963	108.2	0.00	0.40	1.30	2.80	7.70	22.70	66.00	6.40	0.50	0.20	0.10	0.00	0.10
1962	97.4	0.20	0.40	0.90	2.30	7.00	17.50	62.70	5.30	0.90	0.00	0.00	0.20	0.00
1961	92.4	0.30	0.30	0.70	1.60	4.60	20.20	55.70	8.10	0.60	0.10	0.00	0.10	0.10
1960	101.6	0.00	0.90	1.00	3.00	6.60	22.80	58.00	8.20	0.60	0.30	0.10	0.10	0.00
1959	101.6	0.00	0.30	0.70	2.20	9.60	18.50	59.30	9.10	0.70	0.80	0.20	0.20	0.00
1958	104.8	0.20	0.10	0.20	3.40	9.40	16.00	61.70	10.60	1.60	0.20	1.20	0.10	0.10
1957	95.8	0.00	0.00	1.60	2.70	9.00	16.90	56.10	7.10	1.30	0.50	0.50	0.10	0.00
1956	99.7	0.10	0.40	1.10	4.10	7.30	18.80	56.70	9.10	1.30	0.70	0.10	0.00	0.00
1955	105.0	0.10	0.40	1.90	2.60	8.90	21.00	58.90	9.00	1.60	0.40	0.00	0.20	0.00
1954	107.0	0.30	0.70	1.20	3.00	9.00	20.80	60.10	8.90	2.00	0.50	0.30	0.10	0.10
1953	90.5	0.10	0.10	0.70	2.20	5.00	14.20	59.30	6.50	1.30	0.40	0.10	0.40	0.20
1952	109.8	0.30	0.50	1.10	3.10	8.70	17.20	64.80	11.10	2.00	0.50	0.10	0.00	0.40
1951	88.1	0.10	0.00	0.60	2.40	6.30	13.50	55.70	7.60	0.70	1.00	0.20	0.00	0.00
1950	101.5	0.20	0.60	1.50	2.90	6.20	19.50	54.70	11.80	1.80	1.10	0.90	0.30	0.00

주 : 1993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 결과로 작성.

〈부표 2〉 (계속)(여자)

실제 생년	합계	C-6	C-5	C-4	C-3	C-2	C-1	C0	C1	C2	C3	C4	C5	C6
1949	103.2	0.20	0.60	1.60	4.10	6.40	21.20	56.70	8.10	1.90	1.50	0.50	0.00	0.40
1948	96.7	0.40	0.40	0.60	2.60	8.60	15.60	56.90	7.50	2.00	0.80	0.80	0.50	0.00
1947	106.4	0.30	1.10	1.30	3.30	8.20	17.90	63.50	8.70	1.50	0.50	0.10	0.00	0.00
1946	108.7	0.50	1.00	0.90	3.60	9.00	17.60	63.90	9.40	1.30	0.60	0.60	0.10	0.20
1945	97.9	0.60	0.60	1.00	3.00	4.60	15.70	61.30	7.10	2.00	0.40	0.60	0.20	0.80
1944	99.7	0.30	1.20	0.90	1.90	4.00	16.60	68.90	4.10	0.60	0.90	0.10	0.20	0.00
1943	95.9	0.50	0.60	1.30	1.90	5.30	14.80	63.90	5.90	0.60	0.40	0.20	0.10	0.40
1942	92.3	0.30	0.20	1.00	3.20	3.90	18.10	55.40	6.50	2.90	0.60	0.00	0.20	0.00
1941	102.2	0.00	0.00	0.70	1.80	6.90	22.50	61.20	6.60	1.80	0.40	0.00	0.30	0.00
1940	87.3	0.00	0.10	0.10	1.10	8.70	19.30	48.50	6.50	0.60	1.20	0.10	1.10	0.00
1939	101.1	0.40	0.60	1.20	3.60	6.60	25.60	53.80	6.80	2.20	0.30	0.00	0.00	0.00
1938	102.9	0.00	0.80	1.50	2.80	10.10	21.60	55.40	7.90	1.10	0.80	0.50	0.40	0.00
1937	101.4	0.00	0.60	1.00	2.90	8.30	22.70	55.70	8.70	1.00	0.30	0.00	0.20	0.00
1936	94.2	0.10	0.20	1.10	2.90	9.30	16.60	56.00	3.90	1.70	1.00	0.60	0.40	0.40
1935	107.1	0.30	0.60	2.60	3.70	11.70	21.30	58.00	5.90	1.90	0.50	0.30	0.30	0.00
1934	103.4	0.90	0.40	0.60	2.80	6.30	21.00	57.20	10.40	1.50	0.70	0.20	0.50	0.90
1933	94.7	0.40	0.30	0.80	3.40	7.30	19.10	51.70	7.40	1.90	1.20	0.30	0.90	0.00
1932	108.7	0.20	0.00	1.70	3.30	9.20	21.10	60.60	7.20	2.00	0.80	1.10	1.10	0.40
1931	98.6	0.70	0.50	1.80	3.80	8.60	19.00	56.20	4.80	1.20	0.50	0.70	0.40	0.40
1930	102.9	0.20	0.80	1.30	3.30	5.40	18.90	59.50	9.00	2.10	1.60	0.40	0.40	0.00
1929	96.7	1.00	0.60	1.30	1.90	7.00	19.70	54.50	6.60	1.90	1.90	0.00	0.30	0.00
1928	94.3	0.20	0.30	1.40	4.20	6.40	17.80	55.40	5.20	2.30	0.50	0.20	0.40	0.00
1927	109.4	0.00	1.50	1.40	3.10	9.00	20.40	62.50	6.70	1.50	0.70	0.60	0.70	1.30
1926	105.8	0.00	0.90	1.50	3.40	6.60	17.90	57.40	9.80	3.00	2.90	1.30	0.30	0.80
1925	107.1	1.00	0.20	2.30	3.50	4.90	22.50	58.80	7.20	2.00	0.30	1.00	2.70	0.70
1924	106.5	0.50	1.30	1.40	2.70	4.40	17.70	59.40	14.20	2.70	0.90	0.00	0.60	0.70
1923	104.2	0.00	0.00	0.70	2.00	6.80	20.60	54.60	12.00	3.60	2.00	1.50	0.40	0.00
1922	93.4	0.50	0.00	1.00	1.40	4.70	14.80	55.80	8.00	2.80	1.20	0.20	1.80	1.20
1921	104.8	0.70	0.20	1.70	1.90	5.40	16.50	63.20	10.90	1.70	1.00	0.90	0.00	0.70
1920	101.3	0.30	0.90	1.20	1.90	6.40	16.10	55.40	13.20	2.60	1.50	1.80	0.00	0.00
1919	89.1	0.20	0.70	2.00	1.50	3.10	14.00	54.30	9.50	2.60	0.30	0.90	0.00	0.00
1918	107.6	0.00	0.90	0.80	1.90	5.30	15.50	66.40	10.90	3.10	0.50	0.00	2.30	0.00
1917	104.5	0.20	1.60	0.60	3.90	6.70	11.50	66.90	9.10	1.60	1.60	0.00	0.80	0.00
1916	95.9	0.40	0.00	2.30	2.40	5.40	9.80	60.90	7.50	3.90	0.70	1.00	0.00	1.60
1915	118.2	0.00	0.00	1.80	1.10	4.20	17.80	71.30	15.30	2.10	1.20	0.00	3.40	0.00
1914	88.2	0.00	0.50	1.20	0.70	4.50	8.60	59.30	9.10	1.30	0.60	0.00	0.00	2.40
1913	103.1	0.00	0.00	0.90	0.60	4.30	11.50	65.40	12.30	2.10	2.50	0.00	2.70	0.82
1912	116.3	0.00	0.00	0.70	2.20	4.70	13.50	67.10	17.60	7.90	0.00	0.90	0.92	0.82
1911	93.4	0.00	0.00	1.70	3.80	2.70	8.40	56.80	14.20	1.90	1.90	0.31	0.92	0.82
1910	102.3	0.00	0.60	0.00	1.70	3.50	16.20	54.30	19.60	3.70	0.65	0.31	0.92	0.82
1909	105.8	0.00	0.00	1.90	3.30	3.40	9.60	60.80	22.80	1.26	0.65	0.31	0.92	0.82
1908	82.9	0.00	0.60	1.10	1.60	6.40	11.20	50.30	7.76	1.26	0.65	0.31	0.92	0.82

〈부표 3〉 시도별 주민등록지 및 상주지 분포

(단위: %)

		상주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민 등록 지	전국	13.3	6.5	5.8	6.4	5.1	5.0	4.8	12.4	5.1	5.3	5.3	4.7	5.3	6.2	5.8	2.9
	서울	97.6	0.1	0.2	0.2	0.1	0.1	0.0	0.6	0.2	0.2	0.2	0.2	0.1	0.1	0.1	0.0
	부산	0.2	98.5	0.0	0.0	0.0	0.1	0.2	0.1	0.0	0.1	0.0	0.0	0.0	0.1	0.6	0.0
	대구	0.1	0.0	98.4	0.0	0.0	0.0	0.2	0.0	0.0	0.0	0.0	0.0	0.0	1.0	0.1	0.0
	인천	0.4	0.0	0.0	98.9	0.1	0.0	0.0	0.1	0.1	0.1	0.1	0.1	0.0	0.1	0.0	0.0
	광주	0.1	0.0	0.0	0.0	98.8	0.0	0.0	0.0	0.1	0.0	0.1	0.0	0.8	0.0	0.0	0.0
	대전	0.2	0.0	0.0	0.0	0.1	98.6	0.0	0.1	0.1	0.3	0.4	0.1	0.0	0.1	0.0	0.0
	울산	0.0	0.1	0.1	0.0	0.0	0.0	99.3	0.1	0.0	0.0	0.0	0.0	0.0	0.1	0.2	0.0
	경기	0.8	0.0	0.0	0.2	0.1	0.2	0.0	97.4	0.3	0.2	0.2	0.1	0.1	0.2	0.0	0.0
	강원	0.3	0.0	0.0	0.1	0.0	0.0	0.0	0.1	99.1	0.1	0.2	0.0	0.0	0.0	0.0	0.0
	충북	0.2	0.0	0.0	0.0	0.0	0.3	0.0	0.2	0.0	99.0	0.1	0.0	0.0	0.1	0.0	0.0
	충남	0.5	0.0	0.0	0.2	0.1	0.6	0.0	0.4	0.0	0.2	97.7	0.1	0.0	0.0	0.0	0.0
	전북	0.4	0.0	0.0	0.1	0.3	0.1	0.0	0.2	0.0	0.0	0.3	98.6	0.1	0.0	0.1	0.0
	전남	0.2	0.1	0.0	0.1	2.7	0.0	0.0	0.2	0.0	0.0	0.0	0.0	96.6	0.0	0.0	0.0
	경북	0.2	0.0	1.1	0.1	0.0	0.1	0.1	0.1	0.1	0.2	0.0	0.0	0.0	97.9	0.1	0.0
	경남	0.2	0.2	0.2	0.0	0.1	0.0	0.1	0.1	0.0	0.0	0.1	0.0	0.0	0.1	98.8	0.0
제주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99.8	

주 : 2008년 주민등록 확인조사(통계청) 결과로 작성.